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무역학석사 학위논문

한미 FTA 원산지 검증에 관한 연구

- 섬유 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Verification of KOREA-US FTA

- Focused on Textile and Apparel -

지도교수 유 일 선

2013년 8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제관세학과

이 호 준

본 논문을 이호준의 무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위원장 김 재 봉 (인)

위 원 정 홍 열 (인)

위 원 유 일 선 (인)

2013년 6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dCollection

목 차

표 목차 ····· iv
그림 목차 ····· vi
ABSTRACT ····· vii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 3 절 연구의 구성 ····· 4

제 2 장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과 세계 섬유산업
제 1 절 MFA 협정의 역사 ····· 6
1. 세계 섬유 산업의 현황 ····· 6
2. MFA 협정 배경 ····· 9
3. MFA 협정 체결 과정 ····· 12
제 2 절 MFA 협정과 한국 섬유산업 ····· 16
1. MFA 협정 내용 ····· 16
2. 한국섬유산업에 대한 영향 ····· 18

제 3 장 한미 FTA와 섬유분야
제 1 절 한미 섬유산업 비교 ····· 27
1. 한국 섬유산업의 현황 ····· 27
2. 미국 섬유산업의 현황 ····· 31
제 2 절 한미 FTA 협정 체결 과정 ····· 34
1. 한미 FTA 배경 ····· 34

Collection

2. 한미 FTA 내용: 섬유분야 ····· 35
제 3 절 한-미 FTA와 섬유산업 변화 ····· 46
1. 한미 FTA 발효 후 대미 수출 동향 ····· 46
2. 한미 FTA 발효 후 대미 수출 증가 품목 동향 ····· 57

제 4 장 한미 FTA의 원산지 검증

제 1 절 FTA 원산지 증명 ····· 62
1. 원산지 증명의 의의 ····· 62
2.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 비교 ····· 67
3. 한-미 FTA 원산지 증명 절차 ····· 72
제 2 절 한-미 FTA 검증: 섬유분야 ····· 73
1. 검증의 의의 ····· 73
2. 검증의 종류·특성·현황 ····· 74
3. 한-미 검증 방법 비교 ····· 83
4. 미국의 해외 검증 사례 ····· 87

제 5 장 한-미 FTA 검증의 효율적 대응방안

제 1 절 한-미 FTA 검증의 취약성 ····· 94
1. 원산지 직접 검증 경험 부족 ····· 94
2. 원산지 결정기준의 복잡성 ····· 96
3. 외부 정보 수집의 비대칭성 ····· 97
제 2 절 한-미 FTA 검증의 효율적 대응 방안 ····· 98
1. 내부 검증 능력 제고 프로그램 마련 ····· 98
2. 수출 급증 품목 업체 지원 ····· 100
3. 유관기관과의 공조 확대 ····· 102

Collection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결과 요약 ····· 104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108

※ 참고문헌 ····· 110

Collection

표 목차

<표2-1> 세계 섬유류 수출 실적 ····· 8
<표2-2> 세계 섬유류 수입 실적 ····· 9
<표2-3> MFA 1·2기 섬유·의류 국내 생산 동향 ····· 19
<표2-4> MFA 1·2기 섬유 수출입 동향 ····· 20
<표2-5> MFA 1·2기 의류 수출입 동향 ····· 20
<표2-6> MFA 1·2기 국가별 한국산 섬유 對선진국 수출 동향 ····· 21
<표2-7> MFA 1·2기 국가별 한국산 의류 對선진국 수출 동향 ····· 22
<표2-8> MFA 3기 섬유·의류 수출입 동향 ····· 23
<표2-9> MFA 3기 국가별 한국산 섬유 對선진국 수출 동향 ····· 24
<표2-10> MFA 4기 국가별 한국산 섬유 對선진국 수출 동향 ····· 25
<표2-11> MFA 기별 우리나라 섬유 수출 증가 현황 ····· 26
<표3-1> 한국 섬유 산업 현황 추이 ····· 28
<표3-2> 우리나라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동향 ····· 29
<표3-3> 우리나라의 섬유군 수출입 추이 ····· 30
<표3-4> 미국 내 섬유 산업 현황 추이 ····· 31
<표3-5> 미국 내 섬유제품 출하동향 ····· 32
<표3-6> 미국의 섬유군 수출입 추이 ····· 34
<표3-7>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현황 ····· 36
<표3-8> 제11부 방직용 섬유 및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체계 ····· 38
<표3-9> 우리나라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 내역 ····· 41
<표3-10> 섬유·의류 제조공정별 원산지인정 방식 ····· 42
<표3-11> 제11부에 대한 3가지 규칙 ····· 44
<표3-12> 섬유원료 대미 수출동향 ····· 47
<표3-13> 한미 FTA 발효 1년 차 섬유원료(천연) 대미 월별 수출동향(Ⅰ) ····· 48
<표3-14> 한미 FTA 발효 1년 차 섬유원료(화학) 대미 월별 수출동향(Ⅰ) ····· 49
<표3-15> 한미 FTA 발효 1년 차 섬유원료(천연) 대미 월별 수출동향(Ⅱ) ····· 50

Collection

<표3-16> 한미 FTA 발효 1년 차 섬유원료(화학) 대미 월별 수출동향(Ⅱ) ····· 51
<표3-17> 섬유재료 대미 수출동향 ····· 52
<표3-18> 한미 FTA 발효 1년 차 섬유재료 대미 월별 수출동향(Ⅰ) ····· 53
<표3-19> 한미 FTA 발효 1년 차 섬유재료 대미 월별 수출동향(Ⅱ) ····· 54
<표3-20> 의류 대미 수출 동향 ····· 55
<표3-21> 한미 FTA 발효 1년 차 의류 대미 월별 수출동향(Ⅰ) ····· 55
<표3-22> 한미 FTA 발효 1년 차 의류 대미 월별 수출동향(Ⅱ) ····· 56
<표3-23> 섬유원료 수출 증가 품목 현황(HS4단위 기준) ····· 57
<표3-24> 섬유재료 수출 증가 품목 현황(HS4단위 기준) ····· 59
<표3-25> 의류 수출 증가 품목 현황(HS4단위 기준) ····· 60
<표4-1> 당사자별 원산지증빙서류 ····· 64
<표4-2>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 70
<표4-3>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검증 방법 ····· 76
<표4-4>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 ····· 81
<표4-5> 미국 원산지검증 절차(수입물품) ····· 84
<표4-6> 우리나라 원산지검증 절차(수입물품) ····· 86
<표4-7> 현지검증 계획 단계 사항 ····· 89
<표4-8> 검증 계획 제안서 포함 내용 ····· 89
<표4-9> 현지검증 프로세스 ····· 90
<표5-1> 협정별 수출물품 검증 추이 ····· 94
<표5-2> 한미 FTA 발효 후 수출 급증 품목 군(정리) ····· 100

Collection

그림 목차

<그림 4-1> 원산지증명 흐름도 ····· 66
<그림 4-2> 한미FTA 원산지증명 권고서식 ····· 71
<그림 4-3> 미국 섬유 원산지 검증 이행표(by CBP Homepage) ····· 78
<그림 4-4> 2012 섬유 원산지증명 검증 이행표(by CBP Homepage) ····· 79
<그림 4-5> CBP FORM 28(by CBP Homepage) ····· 85
<그림 4-6> 검증사례(Ⅰ)(by KOFOTI) ····· 91
<그림 4-7> 검증사례(Ⅱ)(by KOFOTI) ····· 93

dCollection

A Study on the Verification of KOREA-US FTA
- Focused on Textile and Apparel -

Lee, Ho Joo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ariff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Korean economy has developed with the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which are traditionally labor-intensive industry. The Korean textile industry has led Korean economy in the era of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which worked as a protective barrier of developed countries, when the first and second oil shock hit the world in the 1970s. However, it has declined since the 1980s when the developed countries' policies to protect the textile & clothing industry was implemented. As the Uruguay Round was ended in the 1990s, which led to WTO in 1995, the countries with low wages like China, Vietnam and India made a rapid economic growth in accordance with the liberalization of the textile industry. Therefore, this has put Korean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in more difficult situations.

Collection

After the agreement of Korea-Chile FTA in 2004, Korean textile industry has begun to revitalize. So Korea has continued to build FTAs with economic blocs like ASEAN and EFTA. By establishing FTAs with highly advanced economic blocs including the EU and US, Korea can expand its trading scale throughout the world. In particular, FTAs with the EU and US has given Korea an opportunity to increase its market share in local market and to explore new market. In a meantime, Korean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have faced a tough time due to China, which led the market with lower price. However, the industries have gained competitiveness through higher quality and higher functional textile and apparel products after the establishment of FTAs.

Since 1990s, the U.S. has concluded FTAs with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s a way of forming economic blocks just like NAFTA. The common character of FTAs promoted by the US, is that the rule of origin is strictly regulated in terms of textile and apparel products in order to protect its own textile industry. In other words, the US has imposed the relevant regulation by visiting and verifying manufacturing plant directly to block a variety of illegality with regard to the origin of textile and apparel.

As of March 2013, via the Korea-US FTA, Korean textile industry has established a foothold to enter the US market although Korean textile and apparel manufacturing industries have faced a stagnant growth in the past. So the FTA is expected to play a role as a driving force for the industries to revive when tariff levied on the textile and apparel products is immediately eliminated.

The application ratio of the Korea-US FTA has also reached over 70 percent. Currently, the US is persistently carrying out a certificate process

Collection

on the textile and apparel products imported from the neighboring countries by comparing with NAFTA. Accordingly, it can be a problem for Korean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to expand its exports without any prior knowledge even though we have a privilege of preferential tariff.

In this regard,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roles of Korea Customs Service (KCS), which implements administration work for verification, and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KOFOTI), which manages the textile manufacturer information. Based on the examination on two organizations, this study will ultimately find out certain and effective measures to respond to the US government's verification by conducting a research on the verification field concerning textile and apparel products specified in the Korea-U.S. FTA.

Collection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섬유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그 궤적을 함께하여 온 산업으로 1960~7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섬유 주요 수요국인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자간섬유협정(MFN)[1]을 통해 섬유무역을 쿼터제(Quota)로 관리하려던 시기로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부흥하기도 하고 쇠락되기도 하였다. 특히 1970년대 말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1·2차 오일쇼크로 인해 선진국들이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다자간무역협정 후반기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후 WTO 섬유협정(ATC)[2]에 의해 그동안 쿼터에 묶여있던 섬유 및 의류 품목이 1995년부터 10년간 점진적으로 폐지되어 2005년부터는 GATT 일반원칙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한 번 더 섬유무역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주요 섬유 수요국인 미국, EU의 수입통제가 사실상 사라지게 됨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FTA의 체결과 발

1) 다자간섬유협정(MFN : Multi-Fiber Arrangement)은 섬유류 수입에 대해 수입국이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다자간 협정. 섬유수입 선진국과 섬유 수출 개도국 간 1974년에 체결. 현재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에 따라 2005년부터 섬유분야도 GATT 체제에 편입된다.

2)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 Agreement on Textile and Clothing)은 섬유 교역에 대한 수입 규제(쿼터)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섬유류 교역을 자유화하기 위해 체결된 WTO 협정의 하나로 9개 조항, 1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Collection

효를 통해 역내 자유무역의 기조가 확산되었다. 2011년 7월에는 EU, 2012년 3월에는 미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발효함으로써 다자간섬유무역협정에 의한 선진국 보호주의가 자유무역으로 전환되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섬유 및 의류 부문에 있어 새로운 부흥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미 FTA체결 이후 수혜 업종으로 자동차와 섬유 및 의류 산업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섬유·의류 산업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출하·재고 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대미 무역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눈에 띠는 무역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FTA 협정문에서 상품무역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민감한 농업, 미국에서 민감한 섬유·의류 산업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장을 구성함으로써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한미 FTA 협정문 제4장에서는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들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와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은 원산지 검증에 대한 내용과 세관 협력부분이다. 미국은 이 부분을 통해 섬유산업 보호측면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산업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우리나라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섬유·의류제품의 원산지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수입국으로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수단인 원산지검증을 활용하면 우리나라 섬유 및 의류 수출업체가 FTA 효과를 수혜 받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수출물품에 대해 강도 높은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기에 대응해서 정부, 산업계 및 민간컨설팅 회사들이 역할이 점점 부각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예상 하에 섬유 및 의류산업부문의 원산지 검증시스템을 어떻게 준비하여 미국의 이런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Collection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미 FTA 협정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수혜 품목인 섬유 및 의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및 수입국인 미국의 특혜세율 적용 적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원산지 검증을 직접당사자인 정부와 업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 및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최근 자유무역이 진전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섬유산업 동향을 살펴본다. 또한 선진국들이 다자간섬유협정(MFN)를 통해 섬유 및 의류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주도한 상황 속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섬유 및 의류산업의 무역현황을 살펴본다. 이러한 전반적인 섬유 및 의류산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2012년도에 발효한 한미 FTA의 섬유 및 의류 부문 내용을 파악한다. 이것을 토대로 한미 FTA 발효 후 약 1년간의 섬유 무역액변화 추이를 통해 수출 증가 품목을 분석한다. 이런 수출증가 품목에 대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 방법, 검증절차 및 방법,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검증 매뉴얼 및 해외 검증 사례를 통해 FTA 수혜로 인한 수출이 증가한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섬유 및 의류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이 산업이 가장 큰 수혜산업으로 지목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러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한미 FTA에 중점을 둔다. 한미 FTA에서 섬유·의류부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복잡하면서 향후 원산지 검증 시 우리나라 섬유·의류부문 수출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한정하여 연구한다.

한미 FTA가 발효한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여 한미 FTA 협정문, 관세청 내부 자료, UN 및 한국무역협회 섬유·의류 수출 통계, 섬유산업연합회 발간 자료, 섬유 및 의류 산업 관련 협회 간행물, 학술지, 단행본 및 인터넷 자료 수집 등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여 문헌비교 연구방법을 채택했다.

Collection

제3절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은 제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논문 전체의 서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 구성을 안내하고 FTA 및 원산지 검증에 관한 선행 연구 논문을 살펴봄으로써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제2장은 세계섬유산업의 현황을 고찰하면서 1970년대 한국 섬유산업의 성장기에 섬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섬유협정(MFN)의 역사적 배경·체결과정·협정 내용을 연구하여 세계 섬유 무역 환경을 살펴보고 한국 섬유 수출산업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우선 한국과 미국의 섬유 및 의류 산업을 종사자 수·출하·매출 및 국제무역 통계를 중심으로 산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 배경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섬유 및 의류부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그 다음 2012. 3. 5.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 HS 2단위 및 HS 4단위별로 발효 전후 수출변화를 분석하여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군을 파악하였다.

제4장은 한미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의 개념을 이해하고 타 협정과의 비교 분석한다. 한미 FTA에만 적용되는 섬유 및 의류부문의 원산지증명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대비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 후,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섬유 및 의류분야의 검증의 의의·종류·특성·현황을 살펴본다. 그 다음 한국과 미국의 검증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미국의 해외검증 사례를 통해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였다.

제5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거나 미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진행된 검증 사례가 없고 대미 수출시 우리나라 섬유생산기업의

Collection

정보를 제공하는 비대칭성의 상황에서 미국의 원산지검증에 대해 정부기관과 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 앞 장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본 연구 수행에서 경험한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Collection

제2장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과 세계 섬유산업

제1절 MFA 협정 역사

1. 세계섬유산업의 현황

1948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비록 국제조약이 아닌 정부간 행정협정 형태를 띠긴 했으나 회원국들은 무차별원칙, 즉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세계 무역 질서를 자유무역으로 확립하고자 하였다. 전 산업에 걸쳐 자유무역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무역장벽이 완화되는 추세 속에서 섬유분야만이 예외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었다. 주요 수요국인 미국, 유럽 등 선진제국들은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이 자유무역하면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대규모 실업을 우려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와 홍콩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GATT 체제하의 자유무역 원칙들을 무시하고 일종의 담합형태로 다자간 쌍무협정 성격의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MFA)을 통해 무역을 제한하였다. 이 시기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로 4차례의 협정 연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MFA는 선진국이 자국 섬유시장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대해 주요 섬유공급국인 개도국들은 GATT원칙에 위배되는 보호무역주의 협정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1987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GATT체제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방주의·쌍무주의·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기존

Collection

의 재화 뿐 아니라 서비스와 농산물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무역자유화를 실시할 수 있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1948년부터 유지되었던 잠정적인 GATT체제를 마감하고 1995년 1월1일 정식으로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를 설립하였다. 이제 세계경제는 세계무역 자유화의 흐름을 하나의 질서로 정착시키며 글로벌 무한경쟁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그 동안 세계 섬유무역의 질서를 지배하였던 수입규제(쿼터)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섬유류 무역자유화를 위해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ATC)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1995년·1998년·2002년에 각 3차례에 걸쳐 수입량 기준으로 자유화율을 높인 후, 2005년 1월 1일부터 전 품목의 무역을 완전 자유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1 세계 섬유류 무역 현황

MFA는 GATT체제의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모순적인 협정이었다. 선진국들은 전반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면서도 자국의 경쟁력이 없는 산업에 대해 GATT체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ATC가 체결되면서 섬유의류무역이 단계적으로 자유화가 확대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섬유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표 2-1>과 <표 2-2>는 ATC 개시년도인 1995년부터 최근까지 세계 섬유산업의 수출입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섬유자유화 시대로 복귀하는 시점인 1995년부터 한-EU FTA 발효 시기인 2011년까지 섬유류 수출이 1995년 172억 달러, 세계 시장점유율 5.4%에서 2011년 142억 달러, 세계 시장점유율 2.0%로 수출 절대액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개도국들은 전반적으로 섬유의류시장에서 세계시장점유율을 높여왔다. 먼저 당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은 1995년 746억 달러, 시장점유율 24%에서 2011년 2,841억 달러, 시장점유율

Collection

40.2%로 무려 2.8배 성장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인도, 터키,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개도국 섬유류 공급국은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표 2-2>는 세계 섬유류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5년 50억 달러, 시장점유율 1.6%에서 2011년 117억 달러, 시장점유율 1.6%로 수입 절대액은 2배 증가하였으나 시장점유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미국, 캐나다와 일본 등선진국이나 중국, 인도, 터키와 베트남 등 개도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입 절대액은 증가했으나 시장점유율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다.

<표 2-1> 세계 섬유류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

국가	1995	2005	2009	2010	2011
세계	**310,672**	**480,571**	**526,746**	**602,951**	**706,009**
중국	74,625(24.0)	158,263(32.9)	200,215(38.0)	242,271(40.2)	284,158(40.2)
EU		156,090(32.5)	161,366(30.6)	168,216(27.9)	192,996(27.3)
인도	8,468(2.7)	17,070(3.6)	21,115(4.0)	24,063(4.0)	29,381(4.2)
터키	8,645(2.8)	18,909(3.9)	19,280(3.7)	21,724(3.6)	24,720(3.5)
방글라데시	2,401(0.8)	7,595(1.6)	13,410(2.5)	16,923(2.8)	21,529(3.0)
미국	14,023(4.5)	17,377(3.6)	14,094(2.7)	16,831(2.8)	19,003(2.7)
베트남		5,406(1.1)	10,548(2.0)	13,450(2.2)	16,926(2.4)
한국	**17,270(5.6)**	**12,972(2.7)**	**10,552(2.0)**	**12,577(2.1)**	**14,208(2.0)**
파키스탄	5,867(1.9)	10,691(2.2)	9,867(1.9)	11,778(2.0)	13,632(1.9)
인도네시아	6,090(2.0)	8,312(1.7)	9,123(1.7)	10,964(1.8)	12,836(1.8)
대만	15,106(4.9)	11,267(2.3)	8,795(1.7)	10,698(1.8)	12,010(1.7)

출처 : 섬유산업연합회(2012), 통계로 보는 섬유산업, p49

Collection

<표 2-2> 세계 섬유류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

국가	1995	2005	2009	2010	2011
세계	319,386	493,336	553,289	633,472	741,734
EU		203,701(41.3)	228,669(41.3)	240,604(38.0)	273,067(36.8)
미국	51,808(16.2)	102,609(20.8)	91,270(16.5)	105,318(16.6)	113,947(15.4)
중국	42,183(13.2)	51,065(10.4)	42,673(7.7)	48,473(7.7)	51,637(7.0)
일본	24,743(7.7)	28,352(5.7)	32,294(5.8)	34,063(5.4)	42,129(5.7)
캐나다	5,893(1.8)	10,278(2.1)	11,118(2.0)	12,464(2.0)	14,034(1.9)
한국	**5,032(1.6)**	**6,454(1.3)**	**6,915(1.2)**	**9,275(1.5)**	**11,768(1.6)**
러시아연방	1,369(0.4)	2,166(0.4)	6,417(1.2)	9,248(1.5)	11,328(1.5)
터키	1,860(0.6)	5,228(1.1)	6,866(1.2)	9,375(1.5)	10,829(1.5)
베트남		3,767(0.8)	5,800(1.0)	7,493(1.2)	9,207(1.2)
멕시코	3,680(1.2)	8,566(1.7)	6,308(1.1)	7,444(1.2)	8,603(1.2)

출처 : 섬유산업연합회(2012), op. cit, p50

이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섬유자유화 이후 세계 섬유무역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경쟁력이 있던 선진국시장에서는 MFA로 인한 보호무역장벽으로 제한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사이 개발도상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빠르게 경쟁력을 갖추고 추격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WTO 중심의 다자주의적 대외통상전략에서 FTA 중심의 지역주의적 통상전략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 활력을 위해 미국, EU 등 선진국과 동시에 ASEAN 등 개도국과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하면서 섬유의류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2. MFA 협정 배경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들은 전쟁의 원인이 각국의 만연한 보호무역 정책 시행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후 국제경제 질서를 자유무역기조로 정착시키고자 한다. 이것의 실현을 위해 별도의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가 간 협상

Collection

이 타결되지 못하여 국제무역기구가 설립되지 못하고 잠정적으로 1948년 1월에 GATT체재로 귀결되었다. GATT체제는 국제조약으로 체결되지 못한 한계는 있었지만 꾸준히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는 국제무역협상을 지속함으로써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국가 간 상품무역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폐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GATT체제의 노력으로 1950~60년대 국제 무역질서를 자유무역 기조로 변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1955년도에 일본이 GATT에 가입한 이후 이런 분위기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전후 경제발전을 추진하던 일본, 홍콩 등이 비교우위가 있던 경공업의 주요산업인 섬유의류제품을 미국 및 유럽시장에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이 급증하였다. 이런 섬유의류제품의 빠른 수입증가로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일본과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섬유의류제품 수입규모가 상당한 선진국들은 1950년대 중반 개도국들의 섬유의류제품 수출급증에 대하여 GATT 제19조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만으로 시장교란을 방어하기 어렵고 자국 내 섬유의류산업의 도산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면직물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제한조치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GATT 체제하에서 교섭 결과, 1961년도에 단기면직물협정(STA;Short-Term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Cotton Textiles)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GATT가 추구한 대원칙인 무차별원칙과 배치되는 것으로 GATT와는 별도로 섬유무역만을 규율하는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수입국의 수량규제에 의한 국가별 쿼터 제도의 기본을 이루었다.

이어서 미국은 자국 내 직물제조업자들의 로비활동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협상을 주도하여 1962년 10월부터 1967년 9월까지 5년간 유효한 장기면직물협정(LTA;Long-Term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Cotton Textiles, 1962-1973)을 체결하였다. 주요 규제 대상품목은 면제품으로 우리나라

Collection

는 1964년도에 28번째로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1973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연장하여 총 12년간 시행되었다. 장기면직물협정(LTA)은 섬유류 국제무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을 통하여 시장교란방지를 위하여 수입국의 차별적인 수량규제 즉 수입쿼터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GATT의 일반원칙을 위배하면서 섬유제품 무역에 대한 포괄적 쌍무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석유화학공업의 발달로 인해 폴리에스터 등 인조섬유의 생산과 사용이 증가하였다. 이 제품에 대한 세계무역의 증가로 면제품만을 대상으로 체결한 장기면직물협정(LTA)은 수입규제의 효과가 낮아지게 되었다. 즉 이 협정은 면제품수출보다도 인조섬유제품 수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인조섬유제품 수출국은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게 되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또 다시 미국 편직의류생산업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3]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 섬유 수입국들은 자국 산업보호 등을 위해 비면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GATT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근거하여 섬유무역의 질서 있는 발전과 수출입시장에서의 교란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섬유류 수입에 대하여 수입국이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수량제한(쿼터)을 부과할 수 있도록 MFA를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양국 간 협정을 포함한 기존의 모든 제한을 철폐하는 동시에 섬유수입에 의하여 시장교란이 존재하는 경우 관계 수출국과 협의를 거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이 협정은 GATT 체제가 진행되는 동안 출범 당시 추구하였던 자유무역주의 추구에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것은 GATT 예외규정인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GATT 제11조 제2항), 웨이버(동 제25조 제5항),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량제한(동 제18조 BOP조항), 조부조항(Grandfather 조항) 잔손수입제한조치와 함께 선진국들의 자신들의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국가별로 쿼터

3) 이무영, 다자간섬유협정(MFA)체제에 관한 연구(한국섬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중심), 성균관대 무역대학원, 1988, pp.115.~117.

Collection

(QUOTA)를 정하여 수입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자신들이 설정한 GATT 대원칙과 배치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3. MFA 협정 체결 과정

3.1 장기면직물협정(LTA, 1962.10.1～1973.12.31)

장기면직물협정(LTA)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섬유수요 둔화, 개발도상국과의 임금 격차 확대,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선진국의 면제품 비교우위 상실, 실업문제 악화 등을 배경으로 1962년 10월에 5년 기한으로 발효되었다. 이것은 기존 단기면직물협정과 마찬가지로 수입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새로운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면직물에 대하여 전년도 실제 수입량보다 적지 않는 수준에서 쿼터제를 운영하며 정상적일 때 연 5%의 쿼터증가를 규정하였다. 수입국이 비규제품목 혹은 수출국가에 의한 시장교란상황에 직면하거나 그 위협이 있을 때 새로운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LTA는 애초 선진국의 산업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합의된 국제무역협정이었지만, 이 조정의 실패로 인해 1967년 3년간, 1970년 3년간으로 2차례 연장되었다. 연장 만료연도 이듬해인 1974년에는 면직물을 포함한 포괄적인 다자간섬유협정(MFA)이 체결되었다.[4)]

3.2 다자간섬유협정 제1기(1974～1977)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화학섬유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천연섬유를 대신한 화학섬유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면직물에 대한 규제만 다루었던 LTA는 국제무역협정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였다. 또한 선진국들의 화학섬유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서 산업보호 목적으로 면직물 이외에 모, 인조섬유 등의 다른 섬유류[5)] 수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LTA 3차 만기

4) 조민형, 다자간섬유협정과우리나라섬유류수출증대방안에관한연구, 경성대 무역대학원, 1988, pp.40-41

Collection

연도 이듬해인 1974년에 MFA가 체결되었다.

MFA 제1기에는 섬유류의 국제무역을 확대하고 무역자유화 실현을 위해 주요 수입국[6]인 선진국들이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또한 협정 이행의 감시를 위해 다국적 감시기구인 TSB(Textile Surveillance Body)를 설립하였다. MFA는 시장교란기준에 따른 수입제한을 규정하면서 부속서 A에서는 시장교란[7] 발생 시 관련 수출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60일내에 미 합의 시 부속서 B에서 규정된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1년간 일방적인 수입규제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시장에서 수입이 시장교란을 증가시킬 경우 수입국, TSB간 협의를 통해 수입량의 연 증가율이 6%이하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시장의 유연성을 부과하기 위해 몇 가지 허용범위를 규정하였다. 1년 간 제한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쿼터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품목의 7% 초과 수출을 허락하는 전용(Swing), 협정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참가국간 협의를 통해 2개년도 사이에 조상 혹은 이월(carry forward 혹은 carry over)방식에 의해 초과 한도를 각각의 방식을 합하여 10%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MFA협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제3국산이 우회하여 수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수출금지조항도 삽입되었다.[8]

이와 같이 MFA 제1기에는 GATT체제 하에서 운영되었던 LTA보다는 완화된 규정들을 허용하면서 국제 섬유무역 자유화로 진전된 것이나 GATT의 무차별

---

5) 규제대상품목은 면, 모, 인조섬유, 혼방소재에 의한 사(絲), 원단제품 등이고 의류와 인조 및 합성섬유 등은 시장교란이 있을때 적용하는 품목임.

6) 주요 수입국으로는 미국, EC, 캐나다, 북유럽제국, 오스트리아, 호주, 스위스, 일본이며 이에 대응되는 주요 수출국으로는 우리나라,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스페인, 유고슬라비아, 필리핀이다.

7) 여기서 말하는 시장교란의 요인은 특정 수출국으로부터의 특정품목의 급격한 수입 증가나 유사상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입가격 등이 해당된다.

8) 조민형, 전게서, pp.41-43

Collection

원칙과 일반적 수량규제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선별적 규제를 수용한 점에서는 GATT체제로부터 이탈된 국제무역협정인 것이다.

3.3 다자간섬유협정 제2기(1978～1981)

제1기를 거치면서 MFA에 의해 세계 섬유무역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동 시기인 1973년도에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전쟁으로 원유수출국들이 원유 고시가격을 17% 인상하고, 원유생산은 월 5%씩 감산하기로 함에 따라 중동산 원유 가격은 폭등하였다. 이것이 1차 오일쇼크를 가져왔다. 이것은 세계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전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산유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국제수지적자로 돌아서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은 각국들은 한편으로 전력·석유 공급 삭감,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MFA를 연장하려 하였다. 예컨대 1차 오일쇼크로 인하여 유럽지역 국가들은 외국 섬유제품의 수입증가로 자국 섬유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여 실업률이 급증하자 일방적 쿼터 조정, MFA 탈퇴 위협 등으로 자국 보호주의의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기존의 MFA와 함께 MFA연장의정서를 통해 선진 수입국에 의한 일방적 수입규제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제1기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수입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특정 MFA 규정 적용 중지를 허용하는 합리적 이탈조항(Reasonable Departure)[9]을 마련함으로써 MFA의 기본정신을 퇴색하게 하였다. MFA하에 협정당사국들의 합의만 있으면 MFA를 이탈할 수 있어 섬유류 무역의 규제가 한 단계 강화된 것으로 지금까지 흐름을

9) 합리적 이탈조항이란, 특별한 경우에 특정요소로부터 공동합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탈은 가장 빠른 시일에 관계 참가국들은 약정의 범위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Collection

역류시킨 독소조항이 된 것이다.[10]

3.4 다자간섬유협정 제3기(1982～1986.7)

제2기를 거치는 동안 이란의 석유 수출금수조치로 인해 세계경제는 다시 석유수급 불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8년부터 1979년 사이 1배럴당 30달러로 유가가 상승하였다. 이른바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여 세계경제는 다시 한 번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섬유 수출국인 개발도상국과 섬유 수입국인 선진국 사이에 3번째 MFA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11] MFA 연장 논의는 1981년 1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루어졌는데 1982년 1월부터 1986년 7월까지 4년 7개월간 재연장 합의로 3기를 이어나갔다.

제3기에서는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준쿼터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섬유부문 선진개도국인 우리나라와 홍콩의 수입물량을 감축하기 위해 합리적 이탈조항의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입급증방지조항(anti-surge)이 신설됨으로써 주요 수출 개도국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조항은 상호 협의된 쿼터 내에서도 갑작스런 수입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국 시장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매우 불리한 조항이지만 결국 선진국 의지가 반영된 협상결과가 나왔다.[12]

3.5 다자간섬유협정 제4기(1986.8～1991.7)

1986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GATT 섬유위원회에서는 GATT 체제복귀와 MFA 체제 연장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1991년도까지 5년간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

10) 조민형, 전게서, 1988, pp.44-45
11) 동아일보,「개도국 사활 건 섬유전쟁」(1981. 11. 17)
12) 조민형, 전게서, 경성대 무역대학원, 1988, pp.45-46

Collection

이 시기의 주요 특징으로 섬유 수출입 국가 간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였다. 즉 미합의 시 일방적 수입규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대신 섬유감독기구인 TSB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발동요건을 까다롭게 하였다. 또한 수입급증방지조항(ASM)과 관련하여 미 소진 품목에 대한 쿼터 삭감조항 개선, 최저적정생산(MVP; Minimum Viable Production) 조항 개선, 시장교란기준 측정에 있어서 증빙자료 제출 강화, 국내 산업 피해 측정 시 개도국 상품의 단순한 수입증가 혹은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채택 불가 사항들을 합의하였다. 특히 섬유무역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원장협정서에서 규제대상품목의 확대, 경쟁관계, 우회수출금지,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수입국이 규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섬유류 주요 수입국인 선진국들에게도 유리한 내용이 반영되었다.[13)]

제2절 MFA 협정과 한국 섬유산업

1. MFA협정 내용[14)]

1.1 1기 MFA

제1기 다자간섬유협정(1974.1～1977.12)은 수입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부속서 A는 수입국 생산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혹은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하거나, 급격한 수입증가 또는 절박한 수입, 수입국 시장보다 낮은 저가수입 등 시장교란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였다. 시장점유율 증가는 시장교란 재발 및 악화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6%이상을 허용하였다. 융통성 있는 증가율을 위해 5～7%내외에서 전용할 수 있고, 10%의 조상과 전용 범위를 규정하여 쿼터의 유연성을 마련하였다. 소량수출국에 대한 우대조항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섬유 수입국인 선진국 위주로 합의되었다. 이 때 규제대상

13) 조민형, 전게서, 1988, pp.47-48
14) 조민형, 전게서, 1988, pp.49-53

dCollection

품목(product coverage)으로는 면, 모, 인조섬유 또는 동 혼합 소재로 된 직물 및 의류이다.

1.2 2기 MFA

제2기 다자간섬유협정 (1978.1~1981.12)의 연장 시 목적은 1기와 동일하며, 1기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제한근거로 MFA 제3조에 시장교란기준에 의한 수입제한, 제4조에 시장교란 예방조치로서의 수입제한, 합리적인 이탈(reasonable departure)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증가율은 1기와 동일하나 전용비율은 7%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시장교란 및 악화 시에는 5%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조상과 이월 비율은 동일하였다. 쿼터량 소멸 규정은 없었으나 현실적으로 합리적 이탈 조항에 따라 소멸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소량수출국 우대 및 규제대상품목은 1기와 동일하다.

1.3 3기 MFA

제3기 다자간섬유협정 (1982.1~1986.7)은 1, 2기와 동일한 목표 하에 협정 연장이 되었는데 수입제한근거로 작용하였던 합리적 이탈 조항을 삭제하고 부속서 A(시장교란)에 의해 규제하였다. 증가율은 4항에 수입국 소비증가율 감소를 시장교란으로 규정하였고, 9항에서는 시장교란 재발 및 악화 시 협의 후 6% 이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융통성에 있어서 전용비율 7%를 유지하고 소비증가율을 추가하면서 5% 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9항에서 시장점유율이 높고 쿼터량이 많은 품목과 소진실적이 높을 경우에 융통성을 조정하였다. 쿼터량 소멸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상호 노력하는 것으로 삽입하고 다량 쿼터보유국은 소멸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6항에서 쌍무협정 시 문제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기에는 수입급증방지에 대한 것이 새로이 논의되었는데, 제10항에서는 급격한 수입증가(통상 10%이상)를 방지하도록 규정하였다. 민감품목(sensitive item)

Collection

은 시장점유율 1% 이상이며 소진실적이 50% 이상인 품목을 대상로 하고 있다. 수입 급증 시 규제사항으로 융통성 적용 유보, 수입상한선 설정이 있고, 상호 수락 가능한 수치(quantifiable) 보상을 제공하였다. 소량수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규제량, 융통성 및 연 증가율 우대를 제12항에 규정하였다. 규제대상품목은 1·2기와 동일하다.

1.4 4기 MFA

제4기 다자간섬유협상(1986.8～1991.7)은 기존에 이어오던 목표 하에 섬유무역을 GATT 체제로 복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쌍무협정 체결 시 개도국의 수출증대 측면에서 쌍무협정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개선하였다. 부속서 A(시장교란)에 의해 수입제한은 하였으나 시장교란발동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시장교란 증빙자료 제출 조항을 넣어 단순한 수입증가 등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연 증가율에 있어서는 동일하며 다만 대량수출국에 대한 쿼터량 소멸(cutback)이나 동결(freeze)을 금지하였고 쿼터량 소멸조항은 삭제하였다.

4기에는 수입급증방지를 위해 수입급증우대를 이유로 한 미소진 쿼터품목에 대한 규제수준을 방지하고, 쿼터 규제에서 제외된 품목을 다시 규제할 때 기존 쿼터 수준을 감안한다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소량수출국 우대를 위해 기존 소량수출국 개념에 최빈국을 추가하였고, 규제대상품목에 섬유성 직물(순견직물 제외, 가방 및 카펫 등 제외)을 추가하여 직접적 경쟁관계 개념을 도입하였다.

2. 한국섬유산업에 대한 영향

2.1 수출입 패턴 영향

MFA 1·2기에는 수입제한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였고 성장률 관리에 있어서도

Collection

유연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 섬유 및 의류 수출에 큰 타격을 미치지 않았다. <표 2-3>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섬유 및 의류의 생산 동향을 살펴보면, MFA 1기에 섬유부문은 시작년도인 1974년에 생산지수로 103에서 종료년도 1977년에는 186으로 3년 만에 80%, 의류부문은 동 기간 중 131에서 265로 10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15)]

<표 2-3> MFA 1·2기 섬유·의류 국내 생산 동향

(1973=100)

구분	MFA 1기				MFA 2기								
	'74	'75	'76	'77	'78	'79	'80	Q1	Q2	Q3	Q4	'81 Q1	'81 Q2
생산	129	154	203	245	303	340	333	334	330	329	340	396	366
섬유	103	131	172	186	213	238	262	259	257	257	280	278	284
의류	131	168	238	265	330	319	325	282	330	334	352	395	399

출처 : GATT, Textile and Clothing Statistics, COM.TEX/W/118.5 NOV.,1981, p.9

이와 같은 생산에 힘입어 <표 2-4>에서 보듯이 MFA 1기에는 섬유수출은 3억6천만 달러에서 8억 5천 4백만 달러로 137%, MFA 2기에는 12억 4천 5백만 달러에서 19억 3천만 달러로 55%의 신장세를 보였다. 반면 수입의 증가는 미미하여 섬유의 국제수지는 MFA 1기 초반의 6천 7백만 달러 흑자에서 15억 3천 9백만 달러로 흑자로 22배 성장하였다.

15) GATT Digital Library(http://gatt.stanford.edu/page/home), 2013. 1. 15~ 17. 조회 후 재정리함.

Collection

<표 2-4> MFA 1·2기 섬유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섬유					
	MFA 1기			MFA 2기		
	1973	1976	1977	1978	1979	1980
수출	360	690	854	1,245	1,511	1,930
수입	293	323	339	388	425	391
수지	67	366	514	856	1,086	1,539

출처 : GATT, op. cit, p.15

<표 2-5>에서 보듯이 의류 역시 섬유와 마찬가지로 MFA 1·2기를 통틀어 볼 때, 수출은 1973년 7억 1천 3백만 달러에서 1980년 25억 1천 1백만 달러로 섬유 수출 증가율 보다 높은 25배의 기록적인 성장을 보였으나 수입액은 1천만 달러를 전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의류분야의 국제수지는 섬유 수출증가율과 같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 2-5> MFA 1·2기 의류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의류					
	MFA 1기			MFA 2기		
	1973	1976	1977	1978	1979	1980
수출	713	1,632	1,756	2,165	2,397	2,511
수입	11	9	8	11	15	11
수지	702	1,623	1,748	2,153	2,382	2,500

출처 : GATT, op. cit, p.15

동 시기의 한국산 섬유 대 선진국 수출 동향을 <표 2-6>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EC는 1.15%에서 2.72%, 미국은 1.51%에서 5.79%, 일본은 14.56%에서 21.56%, 캐나다는 1.13%에서 3.21%로 각각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북유럽국가들로의 수출 증가율 추이는 비슷하였으나 우리나라 전체 수

Collection

출액에서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높지 않았다.

<표 2-6> MFA 1·2기 국가별 한국산 섬유 對선진국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불, %)

국가	섬유						
	MFA 1기			MFA 2기			
	1973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EC	2,633	4,063	4,599	5,606	7,597	8,401	6,605
	30	89	122	135	157	179	179
	1.15	2.21	2.67	2.42	2.07	2.14	2.72
미국	1,306	1,444	1,557	1,970	1,943	2,140	2,655
	19	45	41	54	57	108	153
	1.51	3.18	2.67	2.75	2.94	5.07	5.79
일본	1,052	568	574	1,058	1,498	1,235	1,280
	153	103	120	312	394	280	276
	14.56	18.21	20.92	29.55	26.34	22.74	21.56
캐나다	769	1,017	986	1,047	1,331	1,252	1,382
	8	13	17	19	23	33	44
	1.13	1.31	1.73	1.86	1.77	2.67	3.21
오스트리아	470	614	697	799	997	1,124	951
	-	2	2	1	4	5	4
	0.13	0.33	0.40	0.22	0.42	0.49	0.45
핀란드	256	333	338	365	524	603	524
	-	2	2	3	7	10	9
	0.16	0.87	0.63	0.83	1.49	1.69	1.9
스웨덴	493	689	663	688	864	924	734
	2	10	8	7	9	9	7
	0.51	1.53	1.32	1.16	1.06	1.01	1.01
스위스	502	523	610	789	974	1,102	917
	-	-	-	-	1	1	3
	0.03	0.12	0.13	0.12	0.12	0.11	0.35

출처 1 : GATT, Textile and Clothing Statistics, COM.TEX/W/118.5 NOV.,1981, pp.26～41

출처 2 : GATT, Textile and Clothing Statistics, COM.TEX/W/174.29 NOV. 1985, pp. 12～29.

dCollection

<표 2-7> MFA 1·2기 국가별 한국산 의류 對선진국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불, %)

국가	의류						
	MFN 1기			MFN 2기			
	1973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EC	2,212	4,459	4,999	5,964	8,078	9,609	8,455
	101	345	444	504	645	754	846
	4.60	7.74	8.89	8.46	7.99	7.86	10.01
미국	1,971	3,258	3,696	5,312	5,536	6,267	7,406
	229	547	550	766	779	926	1,176
	11.65	16.81	14.88	14.43	14.08	14.38	15.88
일본	546	713	768	1,060	1,539	1,322	1,493
	223	338	358	490	606	402	543
	40.82	47.37	46.65	46.20	39.36	30.46	36.43
캐나다	313	688	566	544	676	653	783
	40	127	103	99	108	90	132
	12.85	18.45	18.27	18.24	16.03	13.86	16.96
오스트리아	177	370	483	570	732	852	695
	3	10	15	17	21	23	22
	1.90	2.92	3.23	3.07	2.87	2.72	3.2
핀란드	52	78	92	91	144	198	181
	3	11	11	9	13	20	2
	1.11	0.92	0.66	0.55	0.37	0.52	1.63
스웨덴	370	696	777	786	1,046	1,229	1,068
	13	30	38	36	37	54	55
	3.66	4.44	4.92	4.69	3.63	4.45	5.15
스위스	431	578	697	912	1,102	1,295	1,204
	1	7	10	11	9	8	15
	0.31	1.29	1.44	1.21	0.86	0.69	1.27

출처 1 : GATT, Textile and Clothing Statistics, COM.TEX/W/118.5 NOV.,1981, pp.26~41
출처 2 : GATT, Textile and Clothing Statistics, COM.TEX/W/174.29 NOV. 1985, pp.12~29.

동 시기의 한국산 의류 대 선진국 수출 동향을 <표 2-7>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점유율이 EC는 4.6%에서 10.01%, 미국은 11.65%에서 15.88%, 캐나다는 12.85%에서 16.96%로 각각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럽국가의 점유율도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일본으로의 수출은 40.82%에서 36.43%로 오히려 감

Collection

소하였다. 특히, MFA 2기에는 오일쇼크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보인 것은 MFA의 수입쿼터 관리제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MFA 3기에는 합리적 이탈 조항이 삭제되고, 부속서 A의 시장교란 조항이 적용되고, 높은 시장점유율 및 다 쿼터 품목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선진국들의 수입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표 2-8>에서 보듯이 대 선진국 섬유 및 의류의 수출액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표 2-8> MFA 3기 섬유·의류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섬유				의류			
	1981	1982	1983	1984	1981	1982	1983	1984
수출	2,194	1,999	2,220	2,377	3,309	3,189	3,048	3,712
수입	465	462	471	543	9	11	9	13
수지	1,728	1,537	1,748	1,835	3,300	3,178	3,039	3,699

출처 : GATT, Textile and Clothing Statistics, COM.TEX/W/174.29 NOV.,1985, p.8

동 시기에 한국산 섬유와 의류의 대 선진국 수출 동향을 <표 2-9>에서 살펴보면, 섬유의 경우 EC에서 상승세를 유지하던 시장점유율이 2.73%에서 2.59%로 소폭 감소하고, 미국의 경우 6.92%에서 7.01%로 소폭 상승, 일본의 경우 20.39%에서 15.26%로 크게 줄어들었다. 기타 유럽지역은 시장점유율이 비슷하거나 하락 추이를 보였다. 의류 역시 섬유와 비슷하게 시장점유율이 EC가 9.56%에서 7.16%, 미국은 15.14%에서 13.19%, 일본은 35.71%에서 33.46%로 하락하면서 선진국 수입 규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Collection

<표 2-9> MFA 3기 국가별 한국산 섬유 對선진국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불, %)

국가	섬유				의류			
	1982	1983	1984	1985	1982	1983	1984	1985
EC	6,276	6,228	6,320	6,614	8,005	7,667	8,089	8,245
	171	144	146	171	765	642	650	590
	2.73	2.32	2.32	2.59	9.56	8.38	8.04	7.16
미국	2,509	2,891	4,085	4,450	8,004	9,468	13,109	14,749
	173	234	296	311	1,212	1,418	1,852	1,944
	6.92	8.10	7.26	7.01	15.14	14.98	14.13	13.19
일본	1,311	1,181	1,610	1,614	1,517	1,245	1,596	1,721
	267	183	282	246	541	396	568	575
	20.39	15.54	17.52	15.26	35.71	31.85	35.64	33.46
캐나다	1,103	1,360	1,513	1,568	785	958	1,200	1,195
	33	45	57	79	151	169	202	187
	3.08	3.34	3.79	5.04	19.32	17.73	16.86	15.71
오스 트리아	907	873	852	863	700	741	777	802
	5	5	7	7	23	27	28	23
	0.64	0.59	0.9	0.87	3.3	3.73	3.64	2.95
핀란드	499	452	433	474	191	182	193	237
	17	17	15	12	3	3	2	2
	3.48	3.82	3.46	2.65	2.03	1.92	1.49	1.09
.노르 웨이	348	314	323	347	616	566	596	674
	2	1	1	-	2	2	4	4
	0.63	0.51	0.37	0.27	0.35	0.19	0.22	0.60
스웨덴	676	634	660	694	1,002	880	919	1,062
	7	5	5	5	53	44	42	44
	1.06	0.80	0.85	0.84	5.36	5.03	4.63	4.19
스위스	855	840	862	901	1,221	1,236	1,287	1,316
	2	1	2	1	15	18	19	18
	0.29	0.23	0.26	0.21	1.30	1.46	1.53	1.37

출처 1 : GATT, Textile and Clothing Statistics, COM.TEX/W/174.29, NOV. 1985, pp.12~29.
출처 2 : GATT, Textile and Clothing Statistics, COM.TEX/W/187.25, NOV. 1986, pp.12~29.

Collection

<표 2-10> MFA 4기 국가별 한국산 섬유 對선진국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불, %)

국가	섬유				의류			
	1987	1988	1989	1990	1987	1988	1989	1990
EC	10,282	11,043	11,239	13,863	15,327	17,549	18,629	24,832
	314	357	375	460	1,212	1,348	1,082	983
	3.05	3.24	3.33	3.32	7.91	7.68	5.81	3.96
미국	5,940	5,703	5,862	6,167	20,153	20,444	23,647	24,763
	431	448	443	482	2,517	2,485	2,772	2,453
	7.25	7.86	7.56	7.81	12.49	12.16	11.72	9.91
일본	2,513	3,578	3,948	3,719	3,946	5,768	7,501	7,372
	271	448	484	381	1,572	2,254	2,501	1,920
	10.77	12.51	12.26	10.24	39.85	39.08	33.35	26.04
캐나다	1,959	2,110	2,282	2,235	1,623	1,716	1,911	2,124
	146	152	159	134	255	264	274	274
	7.47	7.22	6.95	5.98	15.71	15.40	14.36	12.89
오스트리아	1,429	1,470	1,494	1,896	1,534	1,563	1,601	2,197
	15	11	9	11	58	60	41	35
	1.05	0.75	0.63	0.56	3.77	3.86	2.59	1.65
핀란드	730	673	700	765	526	579	649	825
	12	11	10	11	10	13	9	8
	1.63	1.67	1.39	1.43	1.89	2.25	1.36	1.02
노르웨이	549	513	449	526	1,147	1,053	955	1,149
	3	2	3	3	8	13	12	10
	0.51	0.47	0.64	0.58	0.66	1.21	1.30	0.87
스웨덴	1,066	1,104	1,071	1,219	1,835	1,899	1,891	2,305
	13	14	14	15	71	89	73	66
	1.24	1.23	1.34	1.19	3.85	4.69	3.84	2.88
스위스	1,428	1,522	1,542	1,837	2,421	2,536	2,547	3,162
	4	3	5	6	42	43	29	23
	0.29	0.23	0.32	0.31	1.72	1.70	1.14	0.74

출처 : GATT, Textile and Clothing Statistics, COM.TEX/W/239.25 NOV. 1991, pp.19~37.

Collection

MFA 마지막 단계인 4기에는 GATT 체제 복귀를 목표로 합의되고 쌍무협정 체결 시 개도국의 수출증대 측면에서 쌍무협정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섬유와 의류의 대 선진국 수출 점유율은 계속 낮아졌다. 섬유분야는 하락세가 진정되는 분위기였으나, 의류분야는 EC가 7.91%에서 3.96%로, 미국은 12.49%에서 9.91%로, 일본은 39.85%에서 26.04%로, 캐나다는 15.71%에서 12.89%로 각각 낮아짐에 따라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표 2-10>에서 나타났다.

MFA 진행기별로 우리나라 섬유 수출 증가 추이를 <표 2-11>에서 종합하여 살펴보면, MFA 1기에는 섬유수출 증가율이 총수출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2기부터 4기까지 기간 동안에는 27.8%, 11.3%, 8.7%로 총 수출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980년대로 접어든 제4기에는 현격히 줄어들어 1982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MFA으로 인한 섬유류 선진국들의 수입 규제에 기인한다.

<표 2-11> MFA 기별 우리나라 섬유수출 증가 현황[16)]

구분	MFA발효후 (1970~1973)	MFA 1기 (1974~1977)	MFA 2기 (1978~1981)	MFA 3기 (1982~1984)
총수출 연평균증가율	56.9	32.8	20.2	16.3
섬유수출 연평균증가율	58.3	27.8	11.3	8.7

16) 조민형, 전게서, pp.74.~75.

Collection

제3장 한-미 FTA와 섬유분야

제1절 한미 섬유산업 비교

1. 한국 섬유산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1960~8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제조업으로서 한국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이었다. 선진국들이 일정기간 동안 쿼터를 통해서 섬유의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 MFA이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섬유의류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다른 한편 섬유 및 의류의 주요 소비국인 선진국으로부터 확보한 수입쿼터 범위 안에서 저성장이 유지된 것도 사실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섬유의류협정(ATC)이 타결되면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섬유 쿼터제한이 풀리게 되었고, 10년간의 기간 유예를 거친 후 MFA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동남아 등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개도국들에게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면서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침체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은 앞 장 <표 2-1>, <표 2-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계 섬유류 수출입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점유율이 수출은 37%감소하고 수입은 오히려 2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섬유산업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표 3-1>은 우리나라 섬유 산업 현황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을 기

dCollection

준으로 이후 종사자와 인건비는 소폭 감소한 반면, 출하액 및 부가가치는 소폭 상승하였다. 제조업 대비 비중 역시 10% 이내로 섬유산업은 위축된 상황이다.

<표 3-1> 한국 섬유 산업 현황 추이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종사자수 (천명)	섬유제품	113	103	96	89	88	-6.0
	의복제조	90	87	87	79	79	-3.1
	화학섬유	6	5	5	5	4	-9.2
	계	210 (8.6)	196 (7.9)	190 (7.6)	174 (7.1)	172 (7.0)	-4.8
인건비 (십억원)	섬유제품	2,178	2,078	2,016	1,957	1,965	-2.5
	의복제조	1,526	1,546	1,599	1,562	1,345	-2.9
	화학섬유	204	188	196	194	150	-6.8
	계	3,908 (6.1)	3,812 (5.6)	3,811 (5.2)	3,713 (5.0)	3,738 (4.9)	-1.1
출하액 (십억원)	섬유제품	16,926	16,029	15,940	16,895	17,532	1.0
	의복제조	12,414	12,976	13,428	14,502	16,289	7.1
	화학섬유	3,854	3,514	3,845	3,934	3,781	-0.2
	계	33,195 (4.2)	32,519 (3.8)	33,212 (3.5)	35,330 (3.2)	37,602 (3.3)	3.2
부가 가치 (십억원)	섬유제품	6,674	6,052	5,751	6,094	6,228	-1.5
	의복제조	6,001	6,256	6,661	7,041	7,802	6.8
	화학섬유	1,280	776	871	1,035	1,002	-2.9
	계	13,955 (4.8)	13,084 (4.3)	13,282 (4.0)	14,170 (3.9)	15,031 (4.0)	2.0

출처 : 통계로 보는 섬유산업(2011, 섬유산업연합회)
주 : ( )내의 숫자는 제조업대비 비중

<표 3-2>는 2005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제조업 전체와 섬유산업의 출하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섬유산업의 전체 출하지수는 2007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2009년까지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그 이후 2010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08년과 2009년의 하락세는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이다. 제조업 지수보다 낮은 출하를 나타냈는데

Collection

섬유산업과 제조업을 단순 비교하였을 때 2005년도 10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에는 75.7로 25%까지 그 격차가 발생하였다.

섬유제품은 2007년까지 상승하다가 잠시 하락 후 상승세에 있으며, 섬유제품을 이용한 2차 제품인 의복제조는 2008년까지 상승하다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화학섬유제조는 2006년도에 전년대비 11% 감소한 후 고전하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복제조의 출하가 활발하며 그 뒤를 섬유제조, 화섬제조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우리나라 생산자제품 출하지수[17] 동향

연 도	'05	'06	'07	'08	'09	'10	'11
제조업	100	107.9	115.7	118.6	116.8	133.6	142.5
섬유산업	100	102.7 (95.1)	106.7 (92.2)	103.2 (87.0)	98.9 (84.6)	107.6 (80.5)	108.0 (75.7)
섬유	100	100.4	101.2	92.9	87.1	98.3	98.1
의복	100	110.2	119.5	123.4	119.5	124.8	126.6
화섬	100	88.4	89.5	85.1	86.0	94.2	92.8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섬유산업연합회
주 : 2005=100, 괄호 내 숫자는 제조업 대비 섬유산업 비중(저자 재구성)

<표 3-3>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섬유원료, 섬유재료 및 의류의 수출액 추이와 무역수지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섬유원료 수출은 2000년부터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시기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회복을 보여 회복한 반면, 재료 및 의류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섬유원료 수입은 2000년부터 2009년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다가 2011년도에

17) 출하지수(index of producer's shipment) : 생산된 제품의 출하단계에서의 변동 상태를 알기 쉽게 지수로 나타낸 것.

Collection

약 20% 증가하였다. 의류는 2000년 13억 달러에서 2011년 62억 달러로 약 3.8배 급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의류산업이 중국 및 동남아 등 값싼 노동력을 찾아 의류 제조 공장들이 이동한 것에 기인한다.

위 품목군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섬유원료는 2000년도 섬유원료 64억 달러 흑자에서 54억 달러 흑자로 18%감소, 섬유재료는 같은 기간 26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62% 감소, 의류는 37억 달러 흑자에서 39억 달러 적자가 되어 다른 품목군보다 의류 산업의 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3> 우리나라의 섬유군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수지	구분	2000	2002	2005	2007	2009	2011	증감율	
								전기	후기
수출	원료	10,076	8,623	8,222	8,442	7,475	10,756	-18	35
	재료	3,043	2,539	2,612	2,506	2,055	2,684	-14	4
	의류	5,036	4,156	2,865	2,301	1,887	2,294	-43	-8
	계	18,156	15,319	13,700	13,250	11,418	15,735	-25	21
수입	원료	3,635	3,419	3,319	3,636	3,043	5,350	-9	53
	재료	427	466	649	774	753	1,075	52	55
	의류	1,304	2,248	2,957	4,417	3,485	6,269	127	380
	계	5,367	6,134	6,927	8,828	7,238	12,695	29	59
무역수지	원료	6,441	5,204	4,903	4,806	4,432	5,406	-24	21
	재료	2,616	2,073	1,963	1,732	1,302	1,609	-25	-15
	의류	3,732	1,908	-92	-2,116	-1,598	-3,975	-102	204
	계	12,789	9,185	6,773	4,422	4,180	3,040	-47	-40

출처 : UN Comtrade, Country Trade Statistics, 저자 재구성
주 : HS(국제통일상품분류)코드 기준
- 원료(50류～55류, 60류), 재료(56류～59류), 의류(61류～63류)

Collection

2. 미국 섬유 산업의 현황

<표 3-4>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동안 미국 내 섬유 종사자 수, 인건비, 매출액, 부가가치를 품목군 별로 나타내고 있다.

<표 3-4> 미국 내 섬유 산업 현황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4	2006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종사자수 (천명)	사,직물	337	216	174	136	109	-11.8
	가정용섬유	231	166	146	135	112	-7.7
	의류	526	252	200	147	114	-15.6
	섬유계	1,094 (6.6)	634 (4.7)	520 (4.0)	418 (3.3)	335 (3.0)	-12.3
인건비 (백만 달러)	사,직물	9,200	6,252	5,778	4,675	3,895	-9.1
	가정용섬유	5,441	4,705	4,407	4,114	3,426	-5.0
	의류	10,374	5,871	5,013	3,838	2,987	-12.9
	섬유계	25,015 (4.0)	16,828 (3.0)	15,198 (2.6)	12,627 (2.1)	10,308 (1.9)	-9.4
매출액 (백만 달러)	사,직물	51,770	41,149	38,829	32,052	26,461	-7.2
	가정용섬유	33,880	33,637	32,264	26,836	21,261	-5.0
	의류	60,215	32,873	30,325	19,140	14,666	-14.5
	섬유계	145,865 (3.5)	107,659 (2.5)	101,418 (2.0)	78,028 (1.4)	62,388 (1.4)	-9.0
부가가치 (백만 달러)	사,직물	21,429	17,560	17,140	12,532	11,386	-6.8
	가정용섬유	13,797	14,320	15,121	12,072	9,066	-4.6
	의류	28,210	16,621	15,968	9,068	6,937	-14.4
	섬유계	63,436 (3.2)	48,501 (2.4)	48,229 (2.1)	33,672 (1.5)	27,389 (1.4)	-8.9

출처 : 미국 섬유산업 동향(2012. 1., 섬유산업연합회, p.15)
주 : ( )내의 숫자는 제조업대비 비중

미국 섬유업 종사자 수는 2000년에 1백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09년 33만 명 수준으로 대폭 낮아져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대를 기록하였다. 또한, 미국 내 제조 기반의 붕괴로 인해 인건비

dCollection

는 같은 기간 동안 4.0%에서 1.9%로 감소, 매출액은 3.5%에서 1.4%로 감소하였고, 부가가치는 3.2%에서 1.4%로 50%이상 하락을 보이고 있어 미국 섬유산업은 자국 내에서도 매우 위축된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표 3-5>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원사직물류, 섬유제품 및 의류 출하액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내 출하규모에서 산업의 활동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섬유산업 전체 출하액이 2000년도 1,458억 달러에서 2009년 623억 달러로 연평균 11%씩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출하액 기준으로 약 2배 축소되었다.

<표 3-5> 미국 내 섬유제품 출하동향

(단위: 백만달러, %)

분류*		2000	2002	2005	2008	2009	'05-'09년 증가율
원사 직물 류	사류	11,433	10,630	10,368	8,573	6,376	-11.4
	직물	25,993	22,476	20,189	15,970	13,831	-9.0
	염색가공	14,344	12,391	10,786	7,509	6,254	-12.7
	소계	51,770	45,497	41,343	32,052	26,461	-10.6
섬유 제품	가정용	22,520	22,302	22,777	16,537	12,614	-13.3
	기타	11,360	9,780	10,514	16,537	12,614	-13.3
	소계	33,880	32,082	32,791	26,836	21,261	-10.3
의류	니트	7,604	5,957	4,040	2,525	2,016	-15.9
	봉제	48,021	33,065	16,679	15,355	11,477	-12.6
	기타	4,590	2,880	1,953	1,260	1,173	-12.0
	소계	60,215	41,902	25,672	19,140	14,666	-13.1
섬유총계		145,865	119,481	99,806	78,028	62,388	-11.1

출처 : 미국 섬유산업 동향(2012. 1., 섬유산업연합회, p.16)

주 : *NAICS(북미산업표준) 코드 기준

- 313 : 사, 직물류, 3131 : 사류, 3132 : 직물류, 3133: 염색/가공
- 314 : 섬유제품, 3141 : 커튼 등 가정용 섬유, 3149 : 기타 섬유제품
- 315 : 의류, 3151 : 니트, 3152 : 봉제, 3159 : 기타 의류 및 부속품

Collection

부문별로 사류, 염색가공, 가정용 섬유, 의류 등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MFA 종료 이후 새롭게 전개된 섬유협정(ATC) 발효에 따라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제조한 의류제품이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2000년도 이후 연평균 두 자릿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6>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섬유원료, 섬유재료 및 의류의 수출입 동향과 무역수지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산 섬유의 출하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섬유원료의 수출은 2000년 수출액 8,049백만 달러에서 2011년 15,596백만 달러로 약 93% 성장하였다. 의류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0년 이후 최근에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섬유원료 수입은 큰 변동이 없는 수준에서 등락을 보였으며, 섬유재료 및 의류는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특히 의류 부문은 2000년 66,591백만 달러에서 2011년 93,980백만 달러로 41.1%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산업의 기반이 약화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섬유원료 무역수지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흑자폭이 약 20배 증가 하였는데, 미국 내 출하량 감소세와 비교하면 특이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의류분야 무역수지는 중국 등 의류 제조 국가로부터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적자폭이 2000년 56,555백만 달러에서 2011년 86,590백만 달러로 53.1% 증가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세계 각국과의 FTA 등 무역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섬유 및 의류 부문의 적자 확대로 인해 자국 산업 보호 및 제3국 우회 수입에 대비한 검증이나 규제강화 조치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Collection

<표 3-6> 미국의 섬유군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수지	구분*	2000	2002	2005	2007	2009	2011	증감율	
								전	후
수출	원료	8,049	7,641	9,636	10,276	8,096	15,596	19.7	50.6
	재료	3,904	3,909	4,855	5,057	4,348	5,739	24.3	11.0
	의류	10,036	8,422	7,422	6,707	5,895	7,390	-26	2.9
	계	21,990	19,325	21,915	22,041	18,341	28,725	-0.3	30.6
수입	원료	7,653	7,099	7,619	7,461	5,017	7,258	-0.4	-3..0
	재료	3,898	4,231	5,889	6,373	5,018	6,740	51.0	9.4
	의류	66,591	67,389	78,376	90,149	76,703	93,980	25.9	7.3
	계	78,142	78,720	91,090	103,984	86,739	107,978	24.6	6.7
무역수지	원료	396	542	2,017	2,815	3,079	8,338	408	190
	재료	6	△322	△1,034	△1,316	△670	△1,001	1600	1.3
	의류	△56,555	△58,967	△70,954	△83,442	△70,878	△86,590	35.2	7.7
	계	△56,152	△59,395	△69,175	△81,943	△68,398	△79,253	34.3	1.0

출처 : UN Comtrade, Country Trade Statistics, 재구성

주 : HS(국제통일상품분류)코드 기준

- 원료(50류～55류, 60류), 재료(56류～59류), 의류(61류～63류)

제2절 한미 FTA 협정 체결 과정

1. 한미 FTA 배경

한미 FTA는 2003. 8월 정부의 'FTA 추진로드맵'에 기초하여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듬해 5월 미국 USTR 부대표가 한-미 FTA 체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칠레에서 개최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계기로 사전 실무회의 및 점검회의를 거친 후, 수차례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Collection

이에 미행정부는 2005. 9월경 한국 등 4개국에 대하여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였고, 우리나라는 내부회의, 외부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검토에 착수하였다. 당시 전경련, 무역협회, 한국갤럽, 중소기업협회 등에 대해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70~80%대의 높은 찬성을 보였다.

2005년 후반부터 2007년 4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2차례의 비공식 준비협의, 8차례의 공식협상을 통해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1차 타결 내용 중 민감 산업에 대한 추가협상을 진행하였고, 2010. 12. 3 미국 메릴랜드주 콜럼비아 시에서 개최된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추가협상이 타결되었다.

2. 한미 FTA 내용: 섬유분야

한미 FTA는 다른 FTA 협정과 마찬가지로 크게 상품부문과 서비스부문 2가지로 대별된다. 이 협정의 특징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과는 달리 양국 간 민감한 산업분야인 농업, 섬유 및 의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도 장을 두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된 것이다. 즉, 협정에서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산업이 앞에서 열거한 산업들이다.

2.1 섬유 및 의류 분야

섬유 및 의류는 한미 FTA 제4장에서 다루고 있다. 제4장의 구성은 4.1조에서는 양자 긴급조치, 4.2조에서는 원산지규정 및 관련사안, 4.3조에서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 4.4조에서는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 4.5조에서는 본 장의 목적상 용어를 정의하였다.

부속서 4-가에서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정의하면서 원산지 상품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고, 섬유 원재료인 '원단'과 '원사'에 대하여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 된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4-나에서는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 할 수 없는 섬유원료·원사·원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Collection

2.1.1. 양허안 내용

한미 FTA 섬유·의류 분야에서는 미국 측 양허수준의 즉시철폐 비율이 수입액 기준으로 61%, 품목수로 87%에 이른다. 특히 스웨터(미국 관세율 32%), 양말(미국 관세율 13.5%), 화섬 남성바지(미국 관세율 28.2%) 등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의 상당수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산업연구원의 보고에서 연평균 수출 227백만 달러의 증가와 수입 19백만 달러의 증가 효과를 기대하였다.

<표 3-7>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시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을 나타내고 있다.

<표 3-7>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현황

즉시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 인조스웨터 - PE단섬유 - 남성합섬셔츠 - 면양말 - 합성모포 - 남성모직정장	- 남성면셔츠 - PEF 직물 - 화섬양말 - 면직물 - 화섬편물(염색) - 합섬편물블라우스	- 화섬편물(탄성사함유) - PE 강력사 - PEF 직물(염색) - 남성면셔츠(편물) - 여성면바지(직물)

출처 : 섬유산업연합회, 섬유산업 FTA의 이해와 활용 자료집(2012., P.4)

2.1.2 한미 FTA 관련 섬유 및 의류의 범위

한미 FTA에서 섬유 및 의류 분야가 시사하는 것은 협정대상 품목의 품목분류에 대한 중요한 인식이다. 한미 FTA 원산지 규정에서 정의한 "섬유 및 의류제품"은 관세율표상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에서 제63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섬유가 포함된 제4202호의 여행가방류(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류인 것에 한함), 제7109호의 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과 제9404호의 침구류를 포함하고 있다.

<표 3-8>은 관세율표[18] 제11부를 중심으로 방직용 섬유와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섬유·사·직물, 섬유원료, 편물, 의류 그룹

dCollection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제50류에서 제55류는 방직용 섬유 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여기에서 가공 정도에 따라 각 단계의 물품을 섬유(纖維)(또는 원료), 사(絲), 직물(織物, Woven)의 순서로 4단위 호(Heading)를 다시 세분류한다.

둘째, 제56류에서 제59류는 섬유 또는 의류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제57류(양탄자)는 원료가 아닌 제품으로 분류된다.

셋째, 제60류는 직물과는 달리 편물(編物, Knitted fabric)을 분류하는데 편직기로 짠 천으로 위사와 경사가 없는 천(Fabric)으로 분류한다. 이는 파일편물, 폭, 고무사 함유, 위편직·경편직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가공공정에 따라 분류되지는 않는다.

넷째, 제61류에서 제63류는 각종 섬유제품이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 이는 제품의 종류 및 재질에 따라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18) 관세율표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표로 관세법령에 의거하여 관세율표로 명명하고 있다.

Collection

<표 3-8> 제11부 방직용 섬유 및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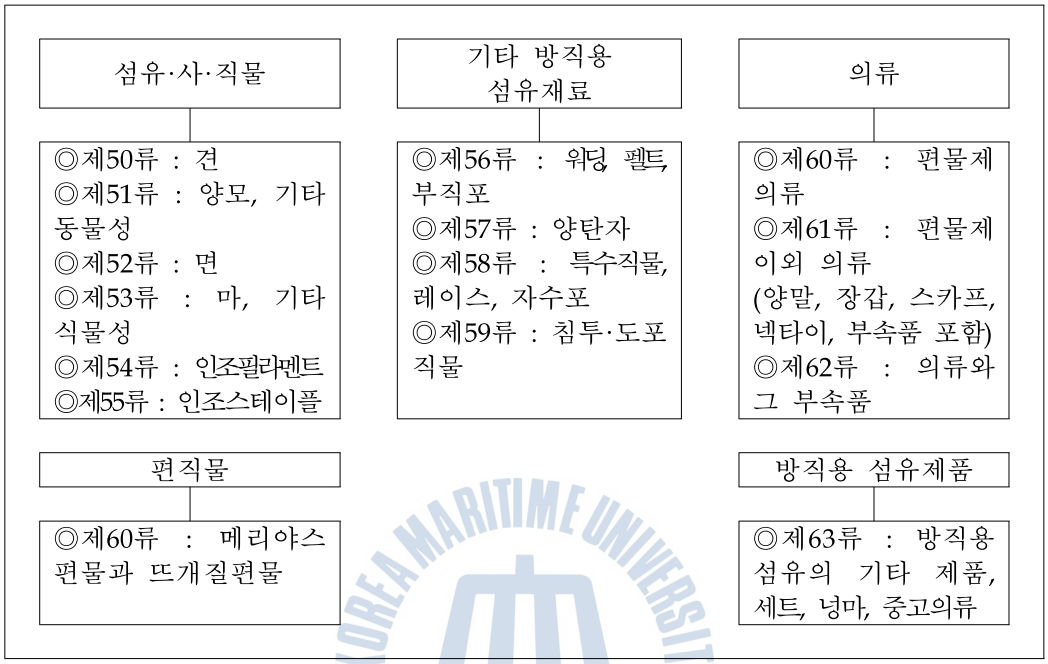

출처 : 관세청, 주요 산업별 한미 FTA 활용매뉴얼(저자 재구성)

2.1.3 양자 긴급 조치

한미 FTA 협정 제4장 4.1조에는 섬유 및 의류의 수입에 있어 자국 산업 보호 조치로써 양자 긴급조치조항을 정의하였다. 이는 한미 FTA 협정 특혜관세대우를 받은 섬유·의류 제품의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급증이 동종 또는 직접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런 실제적 우려를 야기할 때 발동하는 제도이다.

조치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하(필요시 2년 연장 가능)로 동 제도의 존속기간을 관세 철폐 후 10년까지로 한정하였다. 또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재 발동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었다. 조치 내용으로는 관세 감축을 정지하거나 MFA 실행 관세율[19]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dCollection

이러한 섬유긴급조치 시행 시 에는 상대국에게 보상을 제공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긴급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 형태로 보상을 제공한다. 긴급 조치 적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 조치의 무역효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진 관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협정에 따른 섬유긴급조치와 한미 FTA 제10장(무역구제) 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WTO협정에 따른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2.1.4 원산지규정 관련 사안

한미 FTA에서는 당사국 요청이 있을 때, 양 당사국은 영역내의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의 공급 가능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원산지 규정 개정 여부를 검토 할 수 있는 협의 창구를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생산자가 섬유 원료·원사 또는 원단의 상업적인 물량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실질적인 생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범위에 포함하였다.

또한, 최소허용수준이나 세트의 취급 허용 범위를 제시하여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할 수 없는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을 포함하였다. 이때 최소허용수준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어떤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원산지규정상 적용 가능한 세번 변경을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의 총 중량의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보는 것이다.[20]

수입 상품이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의 일반 해석 규칙 3'에 따라 '소매용

19)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신고한 때에「관세법」제50조에 따라 실제로 적용해야 할 관세율 또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조약·협정 또는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실제로 적용해야 할 관세율

20) 한미 FTA 협정문의 일반물품에 대한 최소허용수준 10퍼센트에 비해 섬유·의류 분야는 엄격함.

Collection

세트'를 구성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은 세트 내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 또는 세트 내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치가 세트의 관세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21)]

2.1.5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 협력

양 당사국 중 특히 미국은 섬유 분야 무역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산 섬유로 인한 자국 내 섬유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한미 FTA 뿐만 아니라 이미 체결한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도 같은 기조를 보여 왔다.

한미 FTA에서도 미국은 섬유 및 의류 상품의 무역에 있어 양 당사국이 각자의 조치를 집행하거나 지원하고, 원산지 신청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보장하며, 무역 거래 시 발생하는 국제 협정 이행 조치 집행 및 우회 방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 가능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체약상대국인 우리나라로 하여금 미국으로 수출되어 한미 FTA 협정 관세를 적용받을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생산 종사자에 대한 섬유산업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매년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서 미국 측이 원산지 검증이 용이하게 되는 배경이 되며 통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미합중국으로 수출되지 아니하는 원료 및 제품을 수출하는 자의 정보나 부속서 4-가의 61류의 류 규칙 1 또는 62류의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이는 안감 재료로 사용된 원단 이외의 것으로 61류와 62류에 분류된 상품에 대하여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지식경제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우리나라에 소재한 대미 섬유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미 FTA 협정에서 정한 우리나라가 제공하여야 할

21) 한미 FTA 협정문의 일반물품에 대한 허용범위 15퍼센트에 비해 섬유·의류 분야가 엄격함.

dCollection

정보내역을 수집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매년 미국 측에 제공될 예정으로 고강도 검증이 예상된다.

<표 3-9> 우리나라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 내역

① 대한민국 영역에서 생산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섬유 또는 의류 설비의 소재지(성명, 주소 포함)
② 생산자의 전화번호·모사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③ 기업의 경우, 그 소유자·관리자 및 회사 임원의 성명과 국적, 직위
④ 생산자가 고용한 피고용인의 수와 그들의 업무
⑤ 생산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과 생산능력
⑥ 섬유 또는 의류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수 및 종류
⑦ 대략적인 주당 기계 가동 시간
⑧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또는 그러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원단·원사 또는 섬유원료를 공급하는 자의 신원
⑨ 미합중국 내 고객 각각의 성명 및 연락처

출처 : 한미 FTA 협정문 제4.3조 제2항(저자 재구성)

2.1.6 원산지 결정기준

한미 FTA 협정 부속서 4-가에는 섬유 및 의류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해석에 관한 두 가지 대 원칙을 정의하고 있다.

첫째,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생산의 결과로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이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에 적용 가능한 세번 변경을 거치거나,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품이 달리 이 장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둘째, 이 상품이 이 장 및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대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Collection

미국은 세계적인 섬유 수입국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섬유·의류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자국 내 섬유산업보호를 위하여 엄격한 원산지 규정의 채택을 통상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표 3-10> 섬유·의류 제조공정별 원산지인정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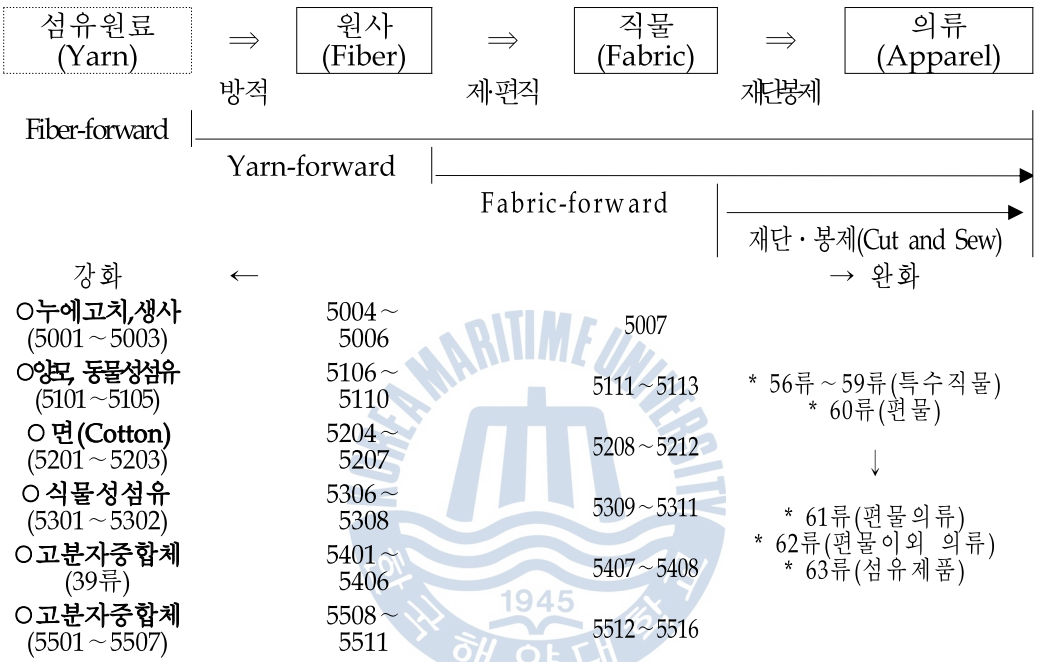

출처 : 관세청, 주요 산업별 한미 FTA 활용 매뉴얼 (저자 재구성)

한미 FTA 체결 당시 상품부문 협정에 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섬유·의류 분야에 대한 보수성과 엄격성으로 인하여 섬유·의류 분야는 협정문 내에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원산지규정 및 상세 내용을 구성하였다.

미국은 NAFTA를 포함하여 자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 역내산 원사(실, Yarn)를 사용하여야만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을 원산지 인정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협정당사국의 '실'을 사용하여 원사, 직물을 제조하고 의류를 생산(재단 및 봉재)해야만 특혜

Collection

원산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협상과정에서 원사기준을 적용 예외를 두어 린넨 직물, 합성 여성 재킷 및 합성 남성 셔츠 등 33개 품목에 예외 국산 원사 사용[22]을 할 수 있다. 이는 상당 수준의 예외 허용으로 인해 대미 수출의 80% 이상이 특혜 수혜가 예상된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3-10>에서 보는 내용이다.

2.1.7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규칙

한미 FTA 협정에서 정한 두 가지 대원칙 하에서 부속서 4-가에서는 섬유 및 의류의 범위 중에서 제11부, 제61류, 제62류, 제63류에 대해 규칙을 정의함으로써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군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 이후에 발생할 미국 측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당사자들이 숙지하여야 할 사항이다.

우선,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대하여 아래 <표 3-11>과 같이 세 가지 규칙을 정해두고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협정 부록 4-나-1의 목록에 있는 품목과 관련하여 원산지 규정을 완화해 주는 조건들로 역내 공급부족 원료에 대해 역외조달을 허용하면서 5년간 매년 1억 평방미터 상당만큼의 수입산 물품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

22) 1. 원사기준 미 채택 직물·의류 제품 : 견직물(5007), 린넨직물(5311), 합성 여성재킷(6104), 합성 남성셔츠 (6205), 2. 섬유 비역내산 원사 사용 : 견사(5006), 비스코스레이온사(5403) 등(출처 : 외교통상부)

Collection

<표 3-11> 제11부에 대한 3가지 규칙

규칙	내 용
1	수입당사국은 방직용 섬유제품(제51류, 제52류, 제54류, 제55류, 제58류 또는 제60류)은 다음으로부터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23]되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한다. 가. 부록 4-나-1의 목록[24]에 있는 하나 이상의 섬유원료 및 원사 나. 가호에 언급된 섬유원료 및 원사의, 그리고 이 부속서상 원산지 상품인 하나 이상의 섬유원료 및 원사의 혼합물(최소허용수준 7%, 원사에 들어있는 탄성사는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이어야 함)
2	수입당사국은 제61류 또는 제62류의 의류 상품이,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편직 또는 두 방법이 모두 사용된 봉재 또는 결합시(칼라 및 커프스 제외), 의류 겉감 원단이 다음과 같을 시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한다. 가. 부록 4-나-1의 목록에 있는 하나 이상의 원단 나. 부록 4-나-1의 목록에 있는 하나 이상의 원사로부터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형성된 하나 이상의 원단 또는 편직된 구성요소 다. (가)호에 언급된 원단, (나)호에 언급된 원단 또는 편직된 구성요소 또는 이 부속서 상의 원산지 상품인 하나 이상의 원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된 구성요소의 혼합물(최소허용수준 7%, 원사에 들어있는 탄성사는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이어야 함)
3	수입당사국은 제61류 또는 제62류의 의류 상품(류 규칙 1에 기술된 보이는 안감의 원산지 무관) 재료가 부록 4-나-1 목록에 포함되고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 충족 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출처 :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4-나

23) 원단 : 제직, 편직, 니들링(미봉), 터프팅, 펠팅, 인텐글링 또는 다른 그러한 과정과 같은 형성과정과, 표백, 염색 그리고 날염을 포함하는 마무리 작업을 말함.
원사 :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쉬트의 압출로부터 시작하여, 필라멘트를 완전히 연신하거나 필름 또는 쉬트를 스트립으로 가늘게 벗기는 것, 모든 섬유를 원사로 방적하는 것, 또는 둘 다를 포함하고, 최종적인 사 또는 합사로 끝나는 모든 생산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함.

2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목록에는 현재 항목이 없으며, 부속서 4-나에 따라 자국의 목록에 변경을 행한 대체 목록을 공표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Collection

2.1.8 공급 부족 원료에 대한 원산지 인정

한미 FTA 협정 부속서 4-나에서 양국이 섬유원료·원사 및 원단에 대해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할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공급 부족한 원료에 대해 원사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수입당사국은 이해관계자[25]로부터 상업용도 여부 판단을 요청받았을 때 30영업일 이내에 자국 영역 내에서 섬유원료·원사·원단이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협정 부록 4-나-1의 자국의 목록에 추가한다. 이 목록에 포함된 품목에 대하여는 품목분류표 제11부에 대한 세 가지 규칙에 따라 원산지 규정이 완화될 수 있다.

제11부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품목분류 제51류, 52류, 54류, 55류, 58류 또는 60류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자격을 부여한다. 한미 FTA 발효 후 최초 5년간 매년 1억 SME[26] 상당 물량까지 적용한다. 제11부 규칙 2 또는 3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품목분류 제61류 또는 제62류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물량은 협정 발효 후 최초 5년간 매년 1억 SME 상당 물량까지 적용함으로써 역외산 원료 조달을 허용하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원산지 규정을 완화한 측면이 있다. 협정문에서는 “상업적인 물량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섬유원료·원산 및 직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수입당사국이 자국 목록에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을 추가하였을 경우, 상업적인 물량으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다고 결정한 경우 목록을 삭제할 수 있으며 자국 결정 공표일로부터 6월까지 발효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군이 섬유·의류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규정인 것이다.

---

25) 이해관계자 : 당사국,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잠재적 또는 실제적 구매자, 또는 의류 상품의 잠재적 또는 실제적 공급자를 말함.

26) SME(Square Meter Equivalent)는 섬유제품의 계산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단위를 의미한다.

Collection

한미 FTA 협정에서 정한 역외산 원료조달 허용 규정은 미국이 여타 FTA에서 부여한 특혜관세물량(tariff preference levels; TPL)[27]과는 달리 FTA 체결 시 구체적인 품목이 정해지지 않고, 특정 품목의 공급부족(short supply)이 발생할 때 신청을 받아 품목을 정하는 방식이다.

제3절 한-미 FTA와 섬유산업 변화

1. 한미 FTA 발효 후 대미 수출동향

1.1 섬유원료 대미 수출동향

아래 <표 3-12>에서 우리나라 섬유원료의 대미 수출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54류(인조필라멘트 외)는 2011년도 1억 8천 3백만 달러에서 2012년도 2억 1천 5백만 달러로 17.5% 증가, 55류(인조스테이플 외)는 1억 5천 9백만 달러에서 1억 9천 7백만 달러로 23.7% 증가하는 실적을 나타냈다. 이들 품목군은 한미 FTA 발효 년도인 2012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한미 FTA 협정의 수혜 품목군으로 화학섬유 원료로 분류된다.

동물성 및 식물성 등 천연 섬유원료로 분류되는 50류를 제외하고는 51~53류 제품군은 최소 2.3%에서 최대 2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1류(양모, 기타 동물성)는 160만 달러에서 122만 달러로 24.3% 감소하였는데 전체 섬유원료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60류(편물)는 소폭 감소하였다. 섬유원료 산업의 동향을 종합하면 한미 FTA 발효 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화학 섬유원료의 수출증가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55류, 54류 순이다.

27) 관세특혜물량은 협정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 수량을 한정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나 한미FTA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Collection

<표 3-12> 섬유원료 대미 수출동향

(단위 : 천불, %)

세번	2010	2011	2012
50류(견)	24,300	32,358	33,077(2.2)
51류(양모, 기타 동물성)	**1,374**	**1,616**	**1,223(△24.3)**
52류(면)	153,467	162,337	158,637(△2.3)
53류(마, 기타 식물성)	3,291	3,352	3,096(△7.7)
54류(인조필라멘트 외)	**153,253**	**183,022**	**215,107(17.5)**
55류(인조스테이플 외)	**167,262**	**159,273**	**197,005(23.7)**
60류(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편물)	209,647	257,218	243,863(△5.2)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국가별 통계
주 : ( ) 값은 전년비 증가율

<표 3-13>은 2012년도 천연 섬유원료의 전년 동월 대비 대미 수출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50류(견) 평균 14.9%의 꾸준한 신장을 보였고, 51류(양모, 기타 동물성)는 1월에 급격히 감소한 후, 한미 FTA 발효 초기인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은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였으나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52류(면), 53류(마, 기타 식물성)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 발효 후 하반기로 갈수록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는 2012년도 화학 섬유원료의 대미 전년도 동월대비 수출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미 FTA 발효 후 혜택을 누린 품목군으로 54류(인조필라멘트 외) 월 평균 22.6%, 55류(인조스테이플 외) 월 평균 26.5%로 한미 FTA 발효 1년 차에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지속적으로 나타냈다. 반면, 60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는 1월에 감소하였다가 한미 FTA 수혜를 받기위해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한 2월부터 5월 사이에 16%대의 수출 증가를 보였으나 6월부터 상

Collection

승이 둔화되면서 연말에는 5.2%의 감소를 보였다.

<표 3-13> 한미 FTA 발효 1년 차 섬유원료(천연) 대미 월별 수출동향(Ⅰ)

(단위 : 천불, %)

세번	50류		51류		52류		53류	
기간	금액	전년비 증가율	금액	전년비 증가율	금액	전년비 증가율	금액	전년비 증가율
1월	2,848	13.7	17	△83.2	12,869	△4	300	54.4
2월	5,549	34.8	141	25.6	24,204	9.9	439	△24.5
3월	8,461	32.1	287	45.1	36,575	1.3	752	△10.1
4월	11,399	25.6	348	8.3	52,726	2.8	862	△25.6
5월	14,482	18.6	601	38.2	65,320	△4.5	1,192	△18
6월	17,136	13.1	727	42.8	78,242	△4.6	1,525	△15.9
7월	19,698	10	774	14.2	94,016	0.4	1,828	△10.8
8월	22,486	9.3	938	14	107,302	△1.3	1,967	△12.7
9월	25,140	8.2	967	7.8	120,940	△2.6	2,346	△7.1
10월	27,092	5.8	1,011	△7	134,037	△0.8	2,640	△1.7
11월	30,358	6.1	1,163	△11.5	147,130	△1.1	2,891	△3.5
12월	33,077	2.2	1,223	△24.3	158,637	△2.3	3,096	△7.7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국가별 통계
주 :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Collection

<표 3-14> 한미 FTA 발효 1년 차 섬유원료(화학) 대미 월별 수출동향(Ⅰ)

(단위 : 천불, %)

세번	**54류**		**55류**		60류	
기간	금액	전년비 증가율	금액	전년비 증가율	금액	전년비 증가율
1월	13,850	△3.6	14,601	15.2	17,598	△8.4
2월	34,212	26.6	31,664	29.7	44,221	25.9
3월	54,100	24.4	50,223	15.1	69,768	17.4
4월	74,621	27.1	67,923	16.9	95,142	13.3
5월	93,752	26.4	89,148	32.2	120,158	10.4
6월	111,126	23.5	102,457	32.7	140,171	4.8
7월	128,978	23.2	120,316	31	161,435	3.6
8월	144,988	22.7	137,963	34.2	175,621	0.4
9월	161,534	20.9	156,702	33.7	191,767	△1.8
10월	178,222	18.4	170,624	29.2	208,065	△3.1
11월	197,953	18.6	182,800	25.4	225,824	△3.3
12월	215,107	17.5	197,005	23.7	243,863	△5.2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국가별 통계
주 :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표 3-15>는 2012년도 천연 섬유원료의 전월대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월별 증가 속도를 보면 한미 FTA 발효 초기에는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전월대비 50%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50류(견), 52류(면)는 각 월 평균 27%, 53류(마, 기타 식물성)는 월평균 25%대를 유지하면서 증가하였고, 51류(양모, 기타 동물성)는 2~3월의 급격한 수출액 증가로 인해 월평균 9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협정 발효 후 1년차 후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

Collection

다. 한미 FTA의 영향은 전년 대비하여 50, 52, 53, 51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5> 한미 FTA 발효 1년 차 섬유원료(천연) 대미 월별 수출동향(Ⅱ)

(단위 : 천불, %)

세번	50류		51류		52류		53류	
기간	금액	전월비 증가율	금액	전월비 증가율	금액	전월비 증가율	금액	전월비 증가율
1월	2,848		17		12,869		300	
2월	5,549	95	141	729	24,204	88	439	46
3월	8,461	52	287	104	36,575	51	752	71
4월	11,399	35	348	21	52,726	44	862	15
5월	14,482	27	601	73	65,320	24	1,192	38
6월	17,136	18	727	21	78,242	20	1,525	28
7월	19,698	15	774	6	94,016	20	1,828	20
8월	22,486	14	938	21	107,302	14	1,967	8
9월	25,140	12	967	3	120,940	13	2,346	19
10월	27,092	8	1,011	5	134,037	11	2,640	13
11월	30,358	12	1,163	15	147,130	10	2,891	10
12월	33,077	9	1,223	5	158,637	8	3,096	7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국가별 통계
주 : 증가율은 전월 대비 증가율

<표 3-16>는 2012년도 화학 섬유원료의 전월대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천연섬유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54류(인조필라멘트 외) 월 평균 32%, 55류(인조필라멘트 외) 29%의 증가를 보였으나 10월 이후 증가세가 주춤하였고, 60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는 월 평균 31% 증가를 하였으나 한미 FTA 발효 초기에 수출이 잠시 증가하였다가 8월 이후 8%대의 낮은 증가에 그

Collection

쳤다. 전반적으로는 협정 발효 1년 차 후반부로 갈수록 증가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한미 FTA 발효 1년 차 섬유원료(화학) 대미 월별 수출동향(Ⅱ)

(단위 : 천불, %)

세번	54류		55류		60류	
기간	금액	전월비 증가율	금액	전월비 증가율	금액	전월비 증가율
1월	13,850		14,601		17,598	
2월	34,212	147	31,664	117	44,221	151
3월	54,100	58	50,223	59	69,768	58
4월	74,621	38	67,923	35	95,142	36
5월	93,752	26	89,148	31	120,158	26
6월	111,126	19	102,457	15	140,171	17
7월	128,978	16	120,316	17	161,435	15
8월	144,988	12	137,963	15	175,621	9
9월	161,534	11	156,702	14	191,767	9
10월	178,222	10	170,624	9	208,065	8
11월	197,953	11	182,800	7	225,824	9
12월	215,107	9	197,005	8	243,863	8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국가별 통계
주 : 증가율은 전월 대비 증가율

Collection

1.2 섬유재료 대미 수출동향

<표 3-17> 우리나라 섬유재료의 대미 수출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56류(워딩, 펠트, 부직포)가 2011년 4천 6백만 달러에서 한미 FTA 발효 연도인 2012년도에 5천 9백만 달러로 28%의 증가, 59류(침투·도포직물)은 2011년도 1억 2천만 달러에서 2012년 1억 3천 4백만 달러로 12%의 증가를 보였다. 반면, 58류(특수직물, 레이스, 자수포)는 2.2% 소폭 증가에 그쳤고, 비중이 작은 57류(양탄자)는 0.4% 감소하였다. 한미 FTA의 수혜를 받은 품목은 56류, 59류 품목으로 나타났다.

<표 3-17> 섬유재료 대미 수출동향

(단위 : 천불, %)

세번	2010	2011	2012
56류(워딩, 펠트, 부직포)	**33,403**	**46,409**	**59,408(28)**
57류(양탄자)	4,373	5,758	5,736(△0.4)
58류(특수직물,레이스,자수포)	30,246	32,723	33,436(2.2)
59류(침투·도포직물)	**95,635**	**120,409**	**134,971(12.1)**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국가별 통계
주 : 괄호안 값은 전년비 증가율

<표 3-18>은 2012년도 섬유재료의 전년 동월대비 대미 수출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56류(워딩, 펠트, 부직포)는 월 평균 25%대 높은 성장을, 뒤를 이어 59류(침투·도포직물)가 17%대의 성장을 보였다. 58류(특수직물, 레이스, 자수포)는 2월에 11% 성장하였으나 이후 주춤하다가 6월부터 3%대의 회복을 보였다. 반면, 57류(양탄자)는 전년대비 수출이 저조한 상황에서 한미 FTA 발효로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세가 회복되었다.

dCollection

<표 3-18> 한미 FTA 발효 1년 차 섬유재료 대미 월별 수출동향(Ⅰ)

(단위 : 천불, %)

세번	**56류**		57류		58류		**59류**	
기간	금액	전년비 증가율	금액	전년비 증가율	금액	전년비 증가율	금액	전년비 증가율
1월	4,179	18.5	345	△55.6	2,106	△5.1	11,063	7.1
2월	9,362	42	916	△18	4,579	11.1	44,221	26.7
3월	13,663	23.5	1,376	△17.5	7,240	△0.3	69,768	16.8
4월	18,240	16.8	1,703	△21.5	9,777	△4.3	95,142	15.6
5월	23,481	28.8	2,222	△16.2	12,587	△6.2	120,158	18.9
6월	27,902	26.3	2,571	△22.8	15,937	1	140,171	21
7월	32,980	27.4	3,087	△21.6	19,405	5	161,435	21.2
8월	38,232	25	3,833	△9.9	22,238	4.9	175,621	19.4
9월	42,823	23.6	4,320	△8.3	25,385	5.7	191,767	19.3
10월	47,907	25.4	4,831	△6.7	27,983	4.3	208,065	18.1
11월	53,661	26	5,283	△1.2	30,780	1.7	225,824	16.2
12월	59,408	28	5,736	△0.4	33,436	2.2	243,863	12.1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국가별 통계(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주 : 증가율은 전년비 증가율

<표 3-19>은 2012년도 섬유재료의 월별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59류(침투·도포직물)가 2월에 300%의 급증으로 월 평균 45%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57류(양탄자) 33.9%, 58류(특수직물, 레이스, 자수포) 31.4%, 56류(워딩, 펠트, 부직포) 30.1%로 나타났다.

Collection

<표 3-19> 한미 FTA 발효 1년 차 섬유재료 대미 월별 수출동향(Ⅱ)

(단위 : 천불, %)

세번	56류		57류		58류		59류	
기간	금액	전월비 증가율	금액	전월비 증가율	금액	전월비 증가율	금액	전월비 증가율
1월	4,179		345		2,106		11,063	
2월	9,362	124	916	166	4,579	117	44,221	300
3월	13,663	46	1,376	50	7,240	58	69,768	58
4월	18,240	33	1,703	24	9,777	35	95,142	36
5월	23,481	29	2,222	30	12,587	29	120,158	26
6월	27,902	19	2,571	16	15,937	27	140,171	17
7월	32,980	18	3,087	20	19,405	22	161,435	15
8월	38,232	16	3,833	24	22,238	15	175,621	9
9월	42,823	12	4,320	13	25,385	14	191,767	9
10월	47,907	12	4,831	12	27,983	10	208,065	8
11월	53,661	12	5,283	9	30,780	10	225,824	9
12월	59,408	11	5,736	9	33,436	9	243,863	8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국가별 통계
주 : 증가율은 전월 대비 증가율

1.3 의류 대미 수출동향

<표 3-20>은 우리나라 의류 품목의 대미 수출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62류(의류와 그 부속품)는 2011년도 3천 9십만 달러에서 2012년도 3천 5십만 달러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수출비중이 높은 61류(편물제 이외의 의류)는 2011년도 2억 3천8백만 달러에서 2012년도 2억 1천 3백만 달러로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63류(방직용 섬유의 기타제품, 세트, 넝마, 중고의류)는 2011년도 2천 2백만 달러에서 2012년도 2천 9백만 달러로 약 28%의 높은 성장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Collection

<표 3-20> 의류 대미 수출동향

(단위 : 천불, %)

	2010	2011	2012
61류(편물제 이외의 의류)	244,112	238,185	213,933(△10.2)
62류(의류와 그 부속품)	39,082	30,967	30,515(△1.5)
63류(방직용 섬유의 기타제품, 세트, 넝마, 중고의류)	**22,772**	**22,785**	**29,337(28.8)**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국가별 통계
주: 괄호안 값은 전년비 증가율

<표 3-21> 한미 FTA 발효 1년 차 의류 대미 월별수출동향(Ⅰ)

(단위 : 천불, %)

세번	61류		62류		63류	
기간	금액	전년비 증가율	금액	전년비 증가율	금액	전년비 증가율
'12.1월	14,225	△24.5	2,106	△14.4	1,602	△21.6
2월	26,900	△8.7	4,485	17.1	3,510	0.2
3월	38,153	△12.4	6,507	1.1	5,523	4
4월	52,414	△10.9	9,285	3.9	7,347	△0.5
5월	69,662	△11.6	12,126	3.5	9,909	7.6
6월	93,415	△11	14,700	5.2	11,858	11.6
7월	118,344	△11.3	18,106	5.1	14,655	22.9
8월	138,753	△11.4	20,256	1.7	17,215	25.7
9월	160,556	△12	22,637	△2	20,075	23.3
10월	178,890	△12	24,992	△3	23,307	23.7
11월	194,848	△12.1	27,873	△2.1	26,601	28.1
12월	213,933	△10.2	30,515	△1.5	29,337	28.8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국가별 통계
주: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Collection

<표 3-21>은 2012년도 의류의 전년 동월대비 수출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63류(방직용 섬유의 기타제품, 세트, 넝마, 중고의류)가 한미 FTA 발효 후 소폭 증가하다가 하반기부터 25%대의 높은 성장을 보였고, 62류는 협정 발효 초기에 소폭 증가하였다가 9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고, 61류는 발효 이후 2012년도 연말까지 10%대의 수출 감소를 보였다. 의류 부문은 다른 부문보다 한미 FTA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2> 한미 FTA 발효 1년 차 의류 대미 월별수출동향(Ⅱ)

(단위 : 천불, %)

세번	61류		62류		63류	
기간	금액	전월비 증가율	금액	전월비 증가율	금액	전월비 증가율
'12.1월	14,225		2,106		1,602	
2월	26,900	89	4,485	113	3,510	119
3월	38,153	42	6,507	45	5,523	57
4월	52,414	37	9,285	43	7,347	33
5월	69,662	33	12,126	31	9,909	35
6월	93,415	34	14,700	21	11,858	20
7월	118,344	27	18,106	23	14,655	24
8월	138,753	17	20,256	12	17,215	17
9월	160,556	16	22,637	12	20,075	17
10월	178,890	11	24,992	10	23,307	16
11월	194,848	9	27,873	12	26,601	14
12월	213,933	10	30,515	9	29,337	10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국가별 통계
주: 증가율은 전월 대비 증가율

<표 3-22>는 2012년도 의류의 대미 월별 수출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61류(편물제 이외의 의류)는 월평균 29.5%, 62류(의류와 그 부속품)는 월평균 30%, 63

dCollection

류(방직용 섬유의 기타제품, 세트, 넝마, 중고의류)는 32.9%의 증가율을 보여 63류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 한미 FTA 발효 후 대미 수출 증가 품목 동향

한미 FTA 발효 년도인 2012년도에 HS 2단위별로 전년대비 수출 증가 품목을 섬유원료, 섬유재료, 의류군으로 구분하여 종합해 보면, 섬유원료는 50류(견) 2.2%, 54류(인조필라멘트 외) 17.5%, 55류(인조스테이플 외) 23.7%으로 나타났다. 섬유재료는 56류(워딩, 펠트, 부직포) 28%, 58류(특수직물, 레이스, 자수포) 2.2%, 59류(침투, 도포직물) 12.1%이고, 의류는 63류(방직용 섬유의 기타제품, 세트, 넝마, 중고의류) 28.8% 증가했다.

<표 3-23>은 HS 4단위별 섬유원료의 전년 대비 대미 수출 증가 품목을 정리한 것이다. 높은 증가율 순으로 보면 5508호는 1,653% 증가했으나 수출액은 20만 달러로 낮은 편이며, 5510호는 164% 증가하면서 수출액 818만 달러로 큰 폭 증가를 보였다. 대미수출액 1억 달러 이상 품목 중에서 증가 품목은 5402호 28.8%, 5503호 25.43%, 5407호 8.6%, 6001호 2.2%, 5208호 1.6% 순으로 나타났다. 섬유 원료 263개(HS 8단위 기준) 중에서 관세 철폐 품목은 160개 품목으로 60%로 비중이 작은 편이다.

<표 3-23> 섬유원료 수출 증가 품목 현황(HS4 단위 기준)

HS 4단위	전년비 증가율	수출액 (천달러)	양허유형[28] (HS 8단위 수)
5007(견직물(견웨이스트 포함))	2.2	33,075	A(3), K(1)
5206(면사(면함유량 85/100 미만,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	40.2	428	A(9) D(11)
5208(면직물(면함유량 85/100 이상, 1제곱미터당 200그램 이하))	**1.6**	**130,526**	A(24),K(2), D(35)
5209(면직물(면함유량 85/100 이상, 1제곱미터당 200그램 초과)	1.7	4,178	A(8), D(11)
5402(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 소매용의 것 제외, 67데시텍스미만 포함))	**28.8**	**100,182**	A(13),K(1) G(11)

Collection

5403(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 소매용의 것 제외, 67데시텍스미만 포함))	3.7	403	A(11)
5407(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 직조직물 포함))	**8.6**	**102,552**	A(14), K(6) D(8), G(20)
5408(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료 직조직물 포함))	26.3	9,611	A(22), K(4)
5503(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 방적준비 처리한 것 제외)	**25.4**	**179,607**	A(5), K(2)
5508(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	**1,653.5**	**209**	A(1), D(1)
5510(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사(재봉사·소매용 제외))	163.9	8,185	A(7)
5512(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함유량 85/100 이상)	26.8	252	A(6)
6001(파일편물(롱·테리 포함, 메리야스·뜨개질의 것에 한함))	**2.2**	**13,598**	A(8) D(1)
6002(메리야스·뜨개질 편물(폭 30cm 이하, 탄성사·고무사의 함유중량이 5/100 이상, 6001호 제외)	193.9	195	A(3) G(1)
6005(경편직 직물류(거룬 편직기로 제조한 것, 6001~6004호 제외)	3.9	61,344	A(10) D(1), G(3)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수출 통계(저자 재구성)

<표 3-24>는 HS 4단위별 섬유재료의 전년 대비 대미 수출 증가 품목을 정리한 것이다. 높은 증가율 순으로 살펴보면, 5602호가 4,220%(수출액 274만 달러 상당액)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5803호 223%(35만 달러), 5601호 217%(132만 달러), 5911호 191%(899만 달러) 순으로 증가하였다.

대미 수출액 비중이 낮은 품목군 임에도 대미 수출액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증가 품목으로 5603호 32.5%, 5903호 19%, 5806호 13.1% 증가 순으로 나타났으며, 섬유 원료 103개(HS 8단위 기준) 중에서 관세 철폐 품목은 90개 품목으로 87%를 차지한다.

28) 한미 FTA 협정 부속서 2-나(관세철폐) : A(관세철폐, 무관세적용), D(5단계 균등 철폐), G(10단계 균등 철폐), K(지속적 무관세 대우)

Collection

<표 3-24> 섬유재료 수출 증가 품목 현황(HS4 단위 기준)

HS 4단위	전년비 증가율	수출액 (천달러)	양허유형 (HS 8단위 수)
5601(방직용 섬유의 워딩·그 제품)	217.8	1,329	A(5), K(1)
5602(펠트[침투·도포·피복·적층불문])	**4,220.8**	**2,745**	A(6), K(1)
5603(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 불문])	**32.5**	**40,368**	K(11)
5604(고무사 및 고무코드, 방직용 섬유사, 5404,5405호 스트립 유사물품)	185.4	2,134	A(3)
5605(금속드리사(짐프 여부 불문))	107	1,817	A(2)
5705(기타 양탄자류와 바닥깔개)	18.5	2,464	A(1), K(1)
5801(파일직물·셔닐직물)	23.7	4,757	A(6), K(1)
5803(거즈(5806호 해당 세폭직물 제외)	223.1	351	A(2), K(3)
5806(세폭직물(5807호 제외),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짐)	**13.1**	**16,197**	A(6), K(1) D(4), G(1)
5807(섬유제의 레이블, 배지 및 유사물품(원단상,스트립,절단형에 한함)	11	2,087	A(6)
5809(금속사의 직물과 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의 직물(의류, 실내용품, 유사물품 사용에 한함)	45.8	226	A(1)
5901(서적 장정용 또는 유사용도 직물류)	47.9	1,044	A(4)
5903(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19**	**66,340**	A(8), K(6) D(3), G(1)
5905(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제)	51.3	478	K(2)
5907(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 배경막)	7.2	828	A(2), K(4)
5910(전동용 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방직용섬유제에 한함))	141.2	86	A(2)
5911(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류주 7호 공업용에 한함))	191.4	8,994	A(7), K(2)

자료 :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수출 통계(저자 재구성)

<표 3-25>는 HS 4단위별 섬유재료의 전년 대비 대미 수출 증가 품목을 정리한 것이다. 높은 증가율 순으로 6101호는 1,503%(수출액 10만 달러 미만) 수출액이 적으며, 이어서 급증한 품목으로는 6309호 513%, 6102호 395%, 6103호 263%, 6201호 163% 순으로 분포하지만 수출액은 1백만 달러 미만에 그쳤다. 의류의 경우 대부분의 제조가 중국, 동남아등 저임금 국가에서 수행되고 우리

dCollection

나라 역시 이들 국가들로부터 많은 의류 품목을 수입하고 있음에 따라 대미 수출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액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수출 증가 품목은 6307호 72%, 6104호 28%, 6116호 6.9%, 6110호 3%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협정문 미국측 양허표의 의류는 380개(HS 8단위 기준)이며 이 중에서 즉시철폐 품목은 371개로 97%나 차지하여,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표 3-25> 의류 수출 증가 품목 현황(HS4 단위 기준)

HS 4단위	전년비 증가율	수출액 (천달러)	양허유형 (HS 8단위 수)
6101(남자 또는 소년용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유사의류(편물에 한함))	**1,503**	**95**	A(7)
6102(여자 또는 소녀용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유사의류(편물에 한함))	395.6	773	A(7)
6103(남자 또는 소년용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긴바지·멜빵바지 및 승마용바지, 반바지(수영복제외))	263.9	321	A(29), K(2)
6104(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멜빵바지 및 승마용바지, 반바지(수영복제외))	**28**	**15,050**	A(41), K(3)
6110(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유사의류(편물에 한함))	**3**	**23,261**	A(11), G(1)
6112(의류(5903, 5906, 5907해당 편물로 만든 것에 한한다)	39.8	244	A(11)
6114(기타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에 한함)	39.1	1,227	A(41) D(1), G(1)
6116(장갑류)	**6.9**	**48,664**	A(24), K(5)
6201(남자 또는 소년용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유사의류)	163.7	380	A(18), K(2)

dCollection

6203(남자 또는 소년용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긴바지·멜빵바지 및 승마용바지, 반바지(수영복제외))	11.3	952	A(40), K(3) D(3), G(1)
6205(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30	5,367	A(8), D(2)
6208(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기타조끼·슬립·패티코트·브리프·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목욕용가운·드레싱가운 및 유사의류)	25.5	389	A(15)
6209(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	22.3	122	A(12), K(1)
6210(의류(5602,5603,5903,5906,5907호 직물류 제품에 한함))	37.6	1,481	A(19), K(1)
6212(브래지어·거들·코르셋·브레이스·서스팬더·가터 및 유사 제품)	89.5	504	A(5) G(2)
6214(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 물품)	1.8	7,598	A(6)
6301(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30.7	2,282	A(4), K(1)
6302(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8.6	5,370	A(30), K(2)
6303(커튼(드레이프를 포함)·실내용블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밸런스)	21.5	299	A(6), K(1)
6307(기타 제품(드레스패턴 포함))	**72**	**16,046**	A(9), K(4)
6309(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제품)	513.8	235	K(1)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수출 통계(저자 재구성)

Collection

제4장 한미 FTA의 원산지 검증

제1절 FTA 원산지 증명

1. 원산지 증명의 의의

1.1 개념

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한다. 이는 어떠한 물품의 생산지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유국 또는 적출국과는 다르며, 또한 원산지와 상표를 혼합한 개념인 지리적 표시와도 구분된다. 이러한 원산지는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이라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잣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무역의 증진과 원활화를 위하여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교토협약[29]을 통하여 국제적인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원산지규정의 제정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비특혜 분야에 적용할 통일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에 관한 협상을 1995년 7월부터 추진 중에 있다. 원산지는 한 나라의 의제가 아니라 국가 간 교역 중 유형의 상품 이동에서 매우 중요한 코드이지만, 국가 간 상이한 제도, 법 규정, 관행 등 복잡성 속에서 통일화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

29) 교토협약의 특별부속서 K에서 원산지결정의 원칙, 원산지결정기준, 2개국 이상 참가시 결정기준, 원산지부여 특례, 직접운송 규정, 원산지 규정에 관한 정보제공들을 다루고 있다.

Collection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에 대한 국제 규범[30]을 중심으로 여러 법령에서 수용하여 법 집행을 하고 있다. 통상 특혜대우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바, 관세특혜대우를 규정하는 것은 관세법령, 자유무역협정이행에관한특례법령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령이 있다. 비특혜를 규정하는 것은 대외무역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령, 수산물품질관리법령, 식품위생법령,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령 등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상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것은 자유무역협정이행에관한특례법령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중 제6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등 각 협정별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에서 바라보는 원산지는 특혜관세대우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와 비원산지가 구분되어 지는 것이 특징이다. 즉, 생산지의 개념보다는 협의적인 개념이라 할 것이다. 양자간 체결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원산지에 효력이 있는 것이다.

1.2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증명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certificate of origin)은 국제무역거래에서 국가 간 관세율의 차이가 있거나 국가 혹은 지역에 따라 수입에 제한되는 경우 또는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신고)된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입증해 주는 행위이다. 후자보다는 전자의 행위를 입증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 동법 시행령, 동시행령 규칙에서 다루고 있다. 세관당국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빙서류를 통하여 당해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한다. 이 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국제간 무역자료, 국내 거래서류, 회계자료 등이 있다.

이러한 증빙서류들은 수출입자들, 한미 FTA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수출자가

30) 1974년 EU의 관세협력이사회(CCC)에서 체결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의 원산지관련 부속서를 말함.

Collection

거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함에 있어 보관해야 할 필수서류들로 우리나라 또는 미국 세관당국 등의 원산지 검증에서 요구하는 서류이다. FTA 협정이나 국내법령에서는 이들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섬유 수출업체가 미국 측에 섬유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한 상황에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무엇인가이다. 국내법에서는 당사자들이 보관하여야 할 서류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비해 한미 FTA 협정에서는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표 4-1>에서 나타난 국내 법령상 수출자 보관서류 중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당해 물품 및 원재료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류(수출자 보관서류 ⑤번 항목)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국내제조(포괄)확인서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미 FTA 협정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검증에 대비한 자료의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당사자별 원산지증빙서류[31]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국내법령	①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포함) ②수입신고필증 ③수입거래관련계약서 ④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자료 ⑥수입물품 국제운송 관련서류	①체약상대국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류 포함) ②수출신고필증 ③당해 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④수출거래관련계약서 ⑤당해 물품 및 원재료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류 ⑥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공정명	①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 제공한 서류 ②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③ 수출자 보관서류 항목 ③, ⑤, ⑥, ⑦의 것 ④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31)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를 열거하였고, 한미 FTA 협정에서는 "모든 기록"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Collection

	⑦사전심사서 사본, 사전심사필요 증빙서류	세서 ⑦당해 물품 및 원재료 출납 및 재고관리대장 ⑧재료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제공한 서류	
한미FTA	① 수입자 증명/인지 : 필요한 모든 기록 ② 수출자/생산자의 증명에 기초 : 신청의 기초로 사용된 증명의 사본 ③ 비당사국 통과/환적 물품 : 요건충족 증명기록(수입자 보유 기록)	아래를 포함한 원산지 상품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모든 기록 -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지불 기록 -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와 지불기록 -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에 관한 기록	
보관기간	5년	5년	

출처 : FTA관세특례법시행령, 한미FTA협정 내용을 재구성.

1.2.1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법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규정[32]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여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료 및 최종 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절차를 마련하여

32)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3

Collection

수출물품의 원산지 입증에 대한 수출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원산지증명 절차의 신속을 기하고 있다.

<그림 4-1> 국내법령에서 규정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도식화한 것이다. 원재료 공급자 및 부품공급자, 중간재 생산자 그리고 완제품 생산자 및 수출자 간에 원산지 확인서의 유통 경로를 한 눈에 나타낸 것으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흐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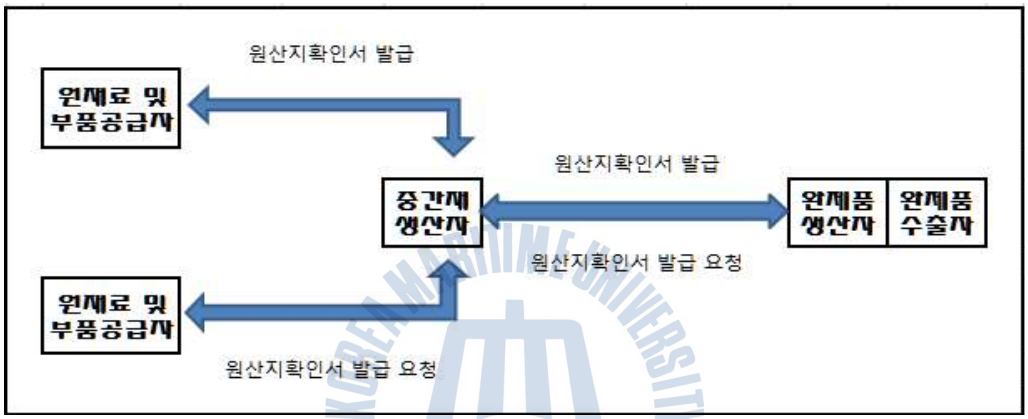

<그림 4-1> 원산지 증명 흐름도

1.2.2 국내제조(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국내법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수출용 원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가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규정[33]하고 있다.

원산지(포괄)확인서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생산자 등은 국내제조확인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33)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4

Collection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앞서 설명한 원산지확인서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생산공정의 누적 등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한미 FTA 누적조항(Accumulation)을 적용함에 있어 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이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서명이 있는 진술서를 구비하여야 할 요건에 부합하는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 비교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협정마다 달리하고 있다. 그 발급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원산지 국가의 세관 혹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해 주는 기관발급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방식이다.

기관발급방식은 세관 혹은 권한 있는 당국에 수출업체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면, 일정기간 심사를 거쳐 원산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업체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절차 면에서도 자율증명방식에 비해 복잡하다. 대신 국가 기관으로부터 증명을 받는 것이므로 공신력은 높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은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로 발급기관은 세관과 상공회의소이다. 체약상대국들은 한-싱가포르 FTA는 세관, 한-아세안 FTA는 회원국별로 세관·통상부·상무부·상공회의소 등 각각 상이하며, 한-인도 CEPA의 경우에는 인도 국가기관인 수출검사위원회에서 발급하고 있다. 이들 체약당사국들은 선진국들이라기보다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으로 국가에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업체에서 신청하는 단계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증명 받는다면 기관발급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Collection

자율증명방식은 수출당사자가 협정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발급하거나 상업송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증명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고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수출자가 허위로 증명할 가능성이 높아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자율발급방식을 택하고 있는 협정은 한-EFTA FTA, 한-EU FTA, 한-칠레 FTA, 한-미 FTA가 있다. 주로 서구 선진국이나 미국의 영향이 큰 중남미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증명도 다시 유럽형과 미주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유럽형 자율발급방식은 EU의 경우, 관세 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자격을 부여받은 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 등 상업서류(원산지신고서)를 상대국 세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인증수출자는 관세 당국으로부터 인증 사용의 감독을 받는다. 또한 일정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인증자격이 취소되므로 기관발급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EFTA에서는 EU와 마찬가지로 인증수출자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강제규정은 아니다. 일반 수출자(exporter)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를 증명함으로써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는 EU가 행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보다는 자율적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 미주형 자율발급방식은 칠레의 경우, 한-칠레 FTA 통일규칙(Korea-Chile FTA Uniform Regulation)에서 정한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에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증명한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생산자는 원산지신고서(declaration of origin)를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8개 필수기재항목을 포함한 자유형식의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수출자·수입자 누구나 발급할 수 있어 가장 자율성이 높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효한 한-터키 FTA의 경우 유럽형의 원산지문구를 송

Collection

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여 자율발급하도록 하였으나 EU와 달리 인증 수출자 자격이 없어도 발급 가능하다.

이와 같이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체결한 협정마다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고 세관당국 등에서 관리하는 형태와 완전히 수출업체가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형태로 대별된다. 협정 당사국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양국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을 증진시킨다는 협정의 취지상 발급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없는 자율증명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자율발급방식은 업체 스스로 발급한다는 측면에서 업체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발급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협정에서는 처벌 조항을 함께 삽입해 두고 있다.

2.1 한미 FTA 협정 적용에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

한미 양 당사국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8대 필수 기재사항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수출당사자가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각종 구비 서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급하여야 만 사후에 발생할 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수입자 역시 자신이 보유한 정보에 근거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 다른 협정과 다른 큰 특징이다. 아래 <표 4-2>에서는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8가지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Collection

<표 4-2>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근거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신청자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필수기재사항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시 연락처 또는 신원확인 정보 포함)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⑤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 ⑧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증명서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4년

기본적으로 양 당사국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위 기재 사항이 명기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그림 4-2>는 관세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때 사용 가능하도록 권고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이다.

Collection

ATTACHMENT A

DATA ELEMENTS FOR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ION OF ORIGIN

1. Name and address of the importer:
The legal name, address, telephone, and e-mail of the importer of record of the good.

2. Name and address of the exporter:
The legal name, address, telephone, and e-mail of the exporter of the good.
(If different from the producer).

3. Name and address of the producer:
The legal name, address, telephone and e-mail of the producer of the good.
(If known).

4. Description of good:
The description of a good shall be sufficiently detailed to relate it to the invoice and the Harmonized System (HS) nomenclature.

5. HS tariff classification number:
The HS tariff classification, to six or more digits, as specified for each good in the Rules of Origin.

6. Preference criterion:
The rule of origin set forth in General Note 33(b) or Article 6.1 of the Agreement. In the case of a product-specific rule specified in General Note 33(o) or Annex 4-A or 6-A of the Agreement, please be specific as to which rule was applied.

7. Single shipment:
Provide the commercial invoice number.

8. Multiple shipments of identical goods:
Provide the blanket period in "mm/dd/yyyy to mm/dd/yyyy" format. (12-month maximum)

9.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title, telephone, fax, e-mail, and certification date:
The signee must have access to the underlying records and the legal authority to bind the company. This field shall include signature, company, title, telephone, fax, and e-mail.

10. Certification: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se representations;

The goods comply with all requirement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and

This document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Signature:
Title:
Phone Number:
Email Address:
Date:

<그림 4-2>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권고 서식

Collection

3. 한미 FTA 원산지 증명 절차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 원산지증명방식과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출입할 때에 별도 양식이 없이 수출자·생산자·수입자 등 어느 무역 당사자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여 미국 세관 당국에 제출함으로써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전통적으로 섬유산업을 보호해 왔기 때문에 미국 내 국내법에서 별도의 증명 절차를 두고 있다. 한미 FTA는 이를 반영하여 섬유 및 의류 분야를 별도로 독립시켜 규정함으로써 특혜원산지를 적용받기 위한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할 것이다.

3.1 섬유·의류 분야 증명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은 섬유·의류 상품에 대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전술한 한미 FTA 특혜용 원산지증명서(C/O) 외에 당해 제품의 제조자식별번호(MID; Manufacture's Identification)와 그 제품의 생산에 사용한 섬유·사·직물의 생산업체 혹은 가공·재단·봉제 업체들이 작성한 제조자 진술서(M/A; Manufacture's Affidavit)를 제출하도록 규정[34]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만으로도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1.1 제조자식별번호(MID)

섬유·의류 제품을 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미국수입자는 상대국 수출자로부터 동 제품의 제조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코드화한 식별번호를 미국 수출 통관 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미국 관세당국이 제조자식별번호를 토대로 향후

34) 미 세관 행정지침(TBT-07-019 및 TBT-11-004)에 따르면 M/A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자는 원사 또는 직물 생산자이거나 재단 봉제 공정 수행자로 한정하나, 미국 통관 실무상 제품 선적행위자, 단순구매 대행자에게도 제출하도록 함.

Collection

FTA 협정 체약 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검증 시 업체를 선별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제조자 식별번호의 구성은 제조국명, 제조자명, 생산설비가 위치한 제조자의 영문 주소지의 머리글자를 조합하여 코드로 생성된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시 미국 수입자가 제조자 식별번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수출자는 그 정보를 상업송장 등 상업서류에 국내 제조자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3.1.2 제조자진술서(M/A)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섬유·의류 제품의 중국산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제조자식별번호 외에 제조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즉, 섬유원료 생산자 및 섬유·의류 가공공정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제조자 진술서를 통하여 수입제품의 원산지를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서를 요구함으로써 미국은 상대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셈이다. 우리나라에는 원산지확인서나 국내제조확인서와 기능은 유사하지만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C/O)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요구하는 정보[35]를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여 미국의 수입자가 제출하는 것이다.

제2절 한미 FTA 검증: 섬유분야

1. 검증의 의의

1.1 개념

35) 제조자진술서에 기록될 정보는 가. 생산설비가 위치한 주소와 생산자명, 나. 생산설비가 위치한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자의 작성자명·연락처 및 수기서명, 다. 섬유함량(fiber content), 원사규격(yarn count), 송장 또는 주문번호, 의류의 스타일번호(style number), 라. 거래관련정보(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판매하였는지 등)이다.

Collection

원산지검증(origin verification)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체결된 양 당사국이 각국에서 기본 관세율에 우대를 부여한 특혜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적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것은 원산지의 역내산 여부를 관세당국이 상세히 조사하여 진위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제3국산 수입에 대비하여 역내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원산지검증을 통해 역내산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국내수입자에게는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게 되고 규정 위반 시에는 벌금 등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수출입자 모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한미 FTA 협정에서는 제4장 제4.3조(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에서 검증에 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규칙에 규정하고 그 하위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한미 FTA 시행령(Pub. L. No. 112-41, 125 Stat.428) 및 연방법률 하에 19 U.S.C 3805 조(2012)에 법제화되어있다.

미국은 우리와는 달리 섬유 및 의류 분야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문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미 연방관세법에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대한민국의 검증규정을 추가하였다(19 C.F.R. Subpart R 10. 1027, Special rule for verifications in Korea of U.S. imports of textile and apparel goods).

2. 검증의 종류・특성・현황

2.1 검증의 종류

한미 FTA 협정에서 정한 검증은 수입국세관이 해외 수출자를 상대로 직접 방문하여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국 측은 섬유 및 의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증원칙과 별도로 수입국세관에서 수출국세관으로 검증을 요

Collection

청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예외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섬유·의류 분야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원산지검증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단은 3가지 방법으로 대별된다. 첫째,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하는 방식, 둘째,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는 방식, 셋째,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자 방문하는 방식이 있다.

2.2 검증의 특성

한미 FTA 협정 섬유 및 의류 분야 검증에 있어서 일반상품에 적용되는 직접검증방식과는 달리 간접검증과 공동검증이라는 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협정 제4.3조 제3항에는 수입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출당사국이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12개월 내에 통보하는 간접검증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그 결과가 부정적이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협정에서 특혜원산지뿐만 아니라 일반원산지에 대하여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협정 제4.3조 제6항에서 수출당사국 영역 내에 소재한 수출자, 생산자 및 검증 관련한 증거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의 주도하에 검증이 이루어진다. 또한 수입국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방문하여 검증할 수 있는 공동검증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방문은 사전 통보 없이 수행[36]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전에 통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섬유 및 의류 수출자는 방문 전에 미국 수입자 측으로부터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받거나 질의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의해 방문

36) 협정에서는 공동검증을 이행함에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변경할 위험으로 인해 방문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임(한미FTA 협정문 제4장 각주5) 참조)

Collection

검증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4-3> 내용과 같다.

<표 4-3>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검증 방법

	간접검증	공동검증
근거	한미 FTA 제4장 - 제4.3조제3,8,10,11항	한미 FTA 제4장 - 제4.3조제6,8,10,11항
방식	수입당사국의 요청 (the request of the importing Party)	수출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함께 방문을 수행 (along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Party, visits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to the premises...)
범위	특혜원산지, 일반원산지 (regardless of wheather an importer claims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the goods)	검증 관련 증거 소지자 (visits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to the premises of an exporter, producer, or any other person that may have evidence)
결정	검증 요청 후 12개월 이내 (within 12 months after its request for a verification)	
조치 前 행위	수출당사국 통보(notify the Exporting Party) 협정관세적용중지(suspending the application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조치	① 12개월 이내 미결정시 - 특혜관세대우 부인 및 적절한 조치(take appropriate action, including deny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② 부정적인 결정시 - 위와 같음	

출처 : 한미 FTA 협정문 (섬유 및 의류분야 저자 재구성)

2.3 미국의 검증 현황[37]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

37) 관세청, 미국 FTA 제도 등 정보 수집 출장결과 보고서(2008) 참조

Collection

(NAFTA)이다. 1994년 발효 초기에 미국 관세청에서는 수입물품의 NAFTA 특혜관세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여러 차례 방문검증(On-site verification)을 실시한 바가 있다. 현재는 NAFTA 제도 안정에 따라 검증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자국 보호 산업인 자동차, 섬유에 대한 검증은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통상 미국의 원산지 검증 시에는 검증 업체의 원산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나서 집중심사(FA; Focused Assesment) 대상으로 선별한다.

특히 자국산업 보호군 중에서 미국 세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섬유·의류 제품에 대하여는 고위험 품목으로 최우선무역관리대상(Priority Trade Issue)으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섬유·의류 제품이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이 용이한 품목으로 판단하고 미국 수입자들의 통관 적법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함으로써 통관 및 검증을 엄격히 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무역패턴 분석, 현장 검증, 제품기록의 검토, 분석 기관을 통한 제품 분석으로 관리하고 있다. 섬유·의류 제품에 대하여 압류, 벌금부과는 물론 강도 높은 직접검사(examination), 견본분석(laboratory analysis), 심사(audit)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한미 FTA협정과 관련 있는 분야가 현장 검증이다. 협정에서는 섬유·의류 부문에 있어서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공동 수행을 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현장검증의 동향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별도로 섬유제품검증팀(CBP TPVT; Textile Production Verification Teams)을 운영하면서 체약 상대국에 소재한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해 검증한다. 무역특혜요청이나 불법 환적과 관련하여 2012년도에는 9개국 174개 생산시설을 방문하였다.

미국은 섬유 및 의류에 대하여 민감품목(sensitive commodities)으로 특별히 취급하고 있으며,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Collection

<그림 4-3>는 미국 관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통계자료로 가장 최근에 공개된 자료이다. 특혜세율 적용에 대해 적발한 건은 TPVT(미국 섬유류 원산지 검증팀 : Textile Production Verification Team)의 무역특혜요구 결과(Trade Preference Claim Results)로 나타난다. 매년 7개국 이상에 소재한 섬유 및 의류 제조공장 100곳 이상을 방문하였고 적발율은 연평균 35%에 이른다. 2011~12년도에는 방문 업체 수가 220여 소재에서 160여 소재로 약 30% 감소한 상황이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Textile Enforcement Fact Sheet										
Seizures (Quota)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Number						358	84	2	0	0
Domestic Value		73.6M	17.7M	104M	48.1M	51M	10.5M	157K	0	0
Seizures (IPR)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Number						5007	3404	4552	7711	7174
Domestic Value						25.8M	22.1M	18.3M	14.47M	14.44M
Seizures (Non-IPR, Including Smuggling)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Number									50	95
Domestic Value									1.03M	7.48M
Commercial Fraud Penalties	**FY03**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Number	20	13	91	82	68	62	55	43	48	21
Penalties	2.4M	52K	8.9M	17.3M	50.1M	3.74M	25.3M	11M	27.32M	23.37M
TPVT Illegal Transhipment Results	**FY03**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Countries visited	12	12	13	13	15	15	12	11	9	9
Factories visited	425	712	483	430	671	472	261	221	165	174
% Discrepancies	47%	65%	47%	53%	61%	56%	41%	19%	22%	26%
TPVT Trade Preference Claim Results	**FY03**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Countries visited	7	6	11	9	10	7	11	11	9	9
Factories visited	102	124	235	163	168	97	223	220	165	174
% Discrepancies	45%	33%	27%	40%	42%	23%	45%	32%	27%	39%
Examinations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Number of examinations				16898	13327	11833	10095	12284	10444	10055
Number of discrepant examinations				2925	2300	2205	1343	1527	1341	1108
% discrepant				17%	17%	19%	13%	12%	13%	11%
Audits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Number of audits performed				42	66	40	42	60	40	40
Recommended revenue recoveries				4.97M	5.61M	4.7M	4.23M	1.8M	6.499M	1.36M
Laboratory Analyses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Number of samples tested				2449	1527	1677	1606	1159	1363	1014
Number discrepant						722	738	554	654	572
% discrepant						43%	46%	48%	48%	56.40%
Special Enforcement Operations						**FY08**	**FY09**	**FY10**	**FY11**	**FY12**
Number intiated						11	5	8	8	4
Number completed						9	3	3	7	6

<그림 4-3> 미국 섬유원산지 검증 이행표(by CBP Homepage[38])

2012년도에 미국 TPVT에서 활동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4>에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TPVT의 무역특혜요구가 있는 부분이다. 2012년도 1/4분기에는 검증 또는 현지 공장 방문은 없었지만, 2/4분기부터 방문 국

38)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섬유 및 의류분야 카테고리(http://www.cbp.gov/xp/cgov/trade/priority_trade/textiles/enf_stat/), 2013. 3. 6. 통계 참조

Collection

가 수는 3개국이며 방문 공장 수는 50~60개에 이르고 있다. 미국 재정위기를 감안하고, 2013년도 시퀘스트 종료에 따른 미국 예산삭감으로 인해 세수에 민감한 산업분야에 대한 특혜세율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검증이 증가될 전망이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FY2012 Textile Enforcement Fact Sheet

Activity	2012 Q 1	2012 Q 2	2012 Q 3	2012 Q 4	2012 Total
Seizures (Smuggling)					
Number	40	20	11	24	95
Value	$3.68M	$1.297M	$.757M	$1.75M	$7.48M
Seizures (IPR)					
Number	1905	1837	1628	1804	7174
Value	$3.36M	$1.83M	$5.99M	$3.26M	$14.44M
Commercial Fraud Penalties					
Number	9	2	6	4	21
Value	$21.31M	$.058M	$1.61M	$.396M	$23.37M
Liquidated Damages					
Textiles	371	140	147	177	835
Entry	357	125	147	169	798
TIB	1	0	0	0	1
Other	0	0	0	0	0
Redelivery	13	15	0	8	36
TPVT Illegal Transshipment					
Countries Visited	0	3	3	3	9
Factories Visited	0	57	65	52	174
% Discrepant	N/A	19%	29%	31%	26%
TPVT Trade Preference Claims					
Countries Visited	0	3	3	3	9
Factories Visited	0	57	65	52	174
% Discrepant	N/A	32%	51%	33%	39%
*Examinations**					
Total Number	2158	1510	3190	3197	10,055
Discrepant	273	175	248	412	1108
% Discrepant	13%	12%	7%	13%	11%
Audits					
Number of Audits/Initiated	12	8	9	10	39
Number of Audits/Completed	8	9	11	12	40
Recommended Recoveries	$458K	$504K	$114K	$286K	$1.36M
Laboratory Analyses					
Number of Samples Tested	241	302	257	214	1014
Number Discrepant	125	170	159	118	572
% Discrepant	51.9%	56.3%	61.9%	55.1%	56.4%
Special Enforcement Operations (SEO)					
Number of SEO Initiated	2	2	0	0	4
Number of SEO Completed	2	0	0	4	6

* Includes examina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iolations.

<그림 4-4> 2012 섬유 원산지 증명 검증 이행표(by CBP Homepage)

2.4 미국의 원산지결정기준[39)]

39) 윤충원,『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집문당, 2004, pp.483-486

Collection

미국은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원칙으로 하여 관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실질적 변형은 하나의 제품이 동일성(identity)을 상실할 만큼 다른 국가에서 변형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특정국에서 어떤 품목, 재료 또는 구성품이 제2국에서 가공될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면 제2국이 원산지가 되는 셈이다.

실질적인 변형은 제조과정에서 투입되는 품목 또는 재료와 구별되는 명칭, 성격 또는 용도를 가지며 새롭고 다른 품목을 생성시킬 때 발생하게 된다. 실질적 변형의 문제는 미국의 관세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즉 생산지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미국은 특혜적 규정과 비특혜적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비특혜적인 경우 원산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당해 제품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첫째, 당해 물품이 전적으로 어느 특정국가에서 성장된 물품, 제조된 물품이거나, 둘째, 당해 물품이 어느 특정 국가에서 새롭거나 상이한 품목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어 그 이전의 물품과 명칭, 성격 또는 용도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섬유류의 경우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미국은 <표 4-4>와 같이 자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일방적인 관세양허 정책에 의거하여 생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술한 비특혜적인 경우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근본적으로는 실질적인 변형원칙에 바탕을 두면서도 국내 부품사용비율, 관세분류표상의 세번변경(tariff-shift), 부가가치 변동 등을 결합하여 적용하거나 또는 특정품목(군)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Collection

<표 4-4>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

구분	관계법 (협정)	결정원칙	누적원칙	추가조건/ 세부사항
① 수입품에 적용되는 미국법의 기본원칙 (비특혜적 원산지결정기준)	CFR10.177(A)2	-실질적변형(합리적 사고를 가진자가 정의하는 실질적 변형을 말함) - CBP는 제조과정이 상품명, 성격을 바꾸거나 수입품의 상용여부 등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함		- 직물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특별기준 적용
②자유무역협정	1) 1985년 미국- 이스라엘 자유무역지대협정이행법, 1996년 수정(WEST BANK, GAZA)	-국내부품 비율이 최소 35%여야 함	증여국가의 혜택은 미국산 원자재가액의 15%로 제한되며, 팔레스타인 당국의 통치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해서는 전체를 누적 계산	- 이스라엘 또는 웨스트뱅크, 가지지역으로부터 직접 선적된 제품(직항선적품)
	2.NAFTA (1993)	- 관세분류표상의 세번변경(단, 승용차, 직물 및 의류 등과 같은 상당수의 제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외규정이 있음)	NAFTA 회원국 내에서 제조된 모든 품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누적 계산함	의류는 NAFTA 회원국에서 재단되고 봉재되어야 하며, 의류 제조를 위한 직물은 나프타 회원국에서 제조되어야함. 또

Collection

		- 대안적으로 특정국의 국내 부품가액이 거래가격의 60% 또는 순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원산지 간주		한 직물 제조를 위한 원사는 나프타 회원국에서 제조되어야 함(YARN FORWARD RULE)
	3) 미국-요르단 자유무역지대 설치 협정(2001)	부가가치기준(평가치의 35%가 국내 부품이어야 함)	35%의 부가가치 계산시 15%까지는 미국산 부품을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음	-직물 및 의류에 대해서는 특별 기준 적용 -직접수입되어야 함
	4)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 (2003)	NAFTA회원국에 대한 기준과 같이 관세분류표상의 세번 변경을 기준으로 함 - 다만, 농산물, 직물 및 의류 등과 같이 수입민감 품목의 경우 특별예외규정이 있음	미국과 칠레산 부품 간에 전체적인 누적계산을 함	직물 및 의류에 대해서는 NAFTA에 적용하는 YARN FORWARD RULE을 적용함
	5)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2003)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관세분류표상의 세번 변경을 기준으로 함	미국과 싱가포르산 부품 간에 전체적인 누적계산을 함	직물 및 의류에 대해서는 NAFTA에 적용하는 YARN FORWARD RULE을 적용함 - 싱가포르로부터 직수입되어야 함

출처 : 윤충원,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집문당(2004)

dCollection

3. 한-미 검증 방법 비교

3.1 미국 원산지 검증 일반 절차

<표4-4>는 미국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원산지 검증은 통상 미국 관세청(CBP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특혜원산지적용을 받은 수입자를 상대로 수행된다.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불충족할 경우에는 특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적용할 관세 등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섬유 및 의류 분야에 대해 한미 FTA 규정에 입각하여 그 세부내용을 연방관세법 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절차적으로는 통관 단계 서류 검증 후 현지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협정 및 규정에서는 검증 전에 사후검증의 발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원산지 정확성의 판단(Accuration of origin)을 위해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있는 경우에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NAFTA의 경우 미 관세청에서 정한 매뉴얼을 따른다.

2단계에서는 수입자 서류 심사(Entry Summary)로 수입물품 심사팀(Importer Specialist)에서 통관단계의 서류를 검토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며,

3단계에서는 정보자료 요청 시 CBP FORM 28 양식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증명하는 물품 원산지증명서, 송품장(Invoice) 및 대금결제 자료, 원재료 원산지 공급을 증명하는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혹은 국내제조확인서, 실질적인 생산을 증명하는 제조공정도, 원재료내역서(BOM : Bill of Material) 및 공장·제조설비목록, 종업원 수 및 임금지급내역서, 외주가공자료 등을 요구하게 된다. 이것들은 수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들이 아니므로 한국에 소재한 수출자에게 재차 요구하게 되고 이를 수용한 수출자는 한미 FTA 협정을 적용받은 수입자에게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미국 관세청에서는 CBP FORM 28에 의거

Collection

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증한 결과를 CBP FORM 29(Notice of Action) 양식에 따라 특혜세율의 부인, 인정, 추가 자료 요청 등으로 표기하여 수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4단계에서는 CBP FORM 28 양식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검증서류에 대해 한 번 더 의심사항이 있을 경우,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국 현지검증을 수행하는데, 섬유 및 의류 상품은 수출국 간접검증을 의뢰하거나 미국 JUMP TEAM으로 불리는 팀에 의해 공동현지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한국으로 간접검증이 의뢰되거나 공동현지검증이 수행된 예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표 4-5> 미국 원산지검증 절차(수입물품)

단계	주제	내용
1	통관시 선별 검사 (Entry)	Officer에 의한 선별(랜덤 혹은 합리적 의심) - Random or Reasonable Care
2	수입자 서류 심사 (Entry Summary)	Importer Specialist에 의한 서류심사 - Documentary Audit
3	정보 자료 요청	CBP FORM 28에 의한 정보 자료 요청
4	수입자 현지 검증	미국 JUMP TEAM 운영
5	검증 결과 통보	CBP FORM 29에 의한 결과 통보 - 원산지 소명 불충분시 원산지 부인통보 및 관세 추징

출처 : 관세청 국외(미국)출장 보고서(2012.12)

미국 관세청에서는 공식적인 검증을 수행하기 전 단계로 아래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은 CBP FORM 28 양식에 따라 미국 특혜적용 수입자로 하여금 원산지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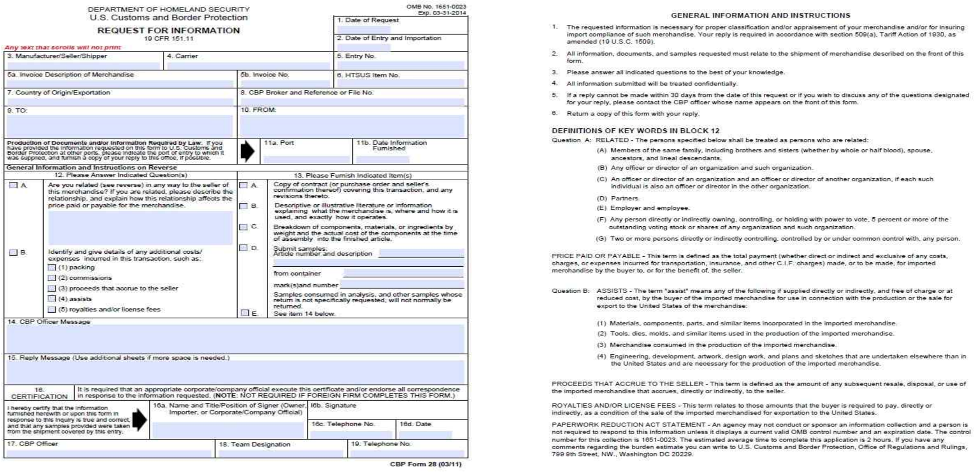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QUEST FOR INFORMATION
19 CFR 151.11

OMB No. 1651-0023
Exp. 03-31-2014

Any text that scrolls will not print

1. Date of Request
2.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3. Manufacturer/Seller/Shipper
4. Carrier
5. Entry No.
5a. Invoice Description of Merchandise
5b. Invoice No.
6. HTSUS Item No.
7. Country of Origin/Exportation
8. CBP Broker and Reference or File No.
9. TO:
10. FROM:

Production of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quired by Law: If you have provided the information requested on this form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 other ports, please indicate the port of entry to which it was supplied, and furnish a copy of your reply to this office, if possible.

11a. Port
11b. Date Information Furnished

General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on Reverse

12. Please Answer Indicated Question(s)

A. Are you related (see reverse) in any way to the seller of this merchandise? If you are related, please describe the relationship, and explain how this relationship affect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merchandise.

B. Identify and give details of any additional costs/ expenses incurred in this transaction, such as:
(1) packing
(2) commissions
(3)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4) assists
(5)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13. Please Furnish Indicated Item(s)

A. Copy of contract (or purchase order and seller's confirmation thereof) covering this transaction, and any revisions thereto.

B. Descriptive or illustrative literature or information explaining what the merchandise is, where and how it is used, and exactly how it operates.

C. Breakdown of components, materials, or ingredients by weight and the actual cost of the components at the time of assembly into the finished article.

D. Submit samples:
Article number and description
from container
mark(s)and number
Samples consumed in analysis, and other samples whose return is not specifically requested, will not normally be returned.

E. See item 14 below.

14. CBP Officer Message

15. Reply Message (Use additional sheets if more space is needed.)

16. CERTIFICATION — It is required that an appropriate corporate/company official execute this certificate and/or endorse all correspondence in response to the information requested. (**NOTE**: NOT REQUIRED IF FOREIGN FIRM COMPLETES THIS FORM.)

I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furnished herewith or upon this form in response to this inquiry is true and correct, and that any samples provided were taken from the shipment covered by this entry.

16a. Name and Title/Position of Signer (Owner, Importer, or Corporate/Company Official)
16b. Signature
16c. Telephone No.
16d. Date
17. CBP Officer
18. Team Designation
19. Telephone No.

CBP Form 28 (03/11)

GENERAL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1. The requested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proper classification and/or appraisement of your merchandise and/or for insuring import compliance of such merchandise. Your reply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509(a), Tariff Action of 1930, as amended (19 U.S.C. 1509).
2. All information, documents, and samples requested must relate to the shipment of merchandise described on the front of this form.
3. Please answer all indicated questions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4. All information submitted will be treated confidentially.
5. If a reply cannot be mad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is request or if you wish to discuss any of the questions designated for your reply, please contact the CBP officer whose name appears on the front of this form.
6. Return a copy of this form with your reply.

DEFINITIONS OF KEY WORDS IN BLOCK 12

Question A: RELATED - The persons specified below shall be treated as persons who are related:

(A) Members of the same family, including brothers and sisters (whether by whole or half blood), spouse, ancestors, and lineal descendants.
(B) Any officer or director of an organization and such organization.
(C) An officer or director of an organization and an officer or director of another organization, if each such individual is also an officer or director in the other organization.
(D) Partners.
(E) Employer and employee.
(F) Any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owning, controlling, or holding with power to vote, 5 percent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or shares of any organization and such organization.
(G) Two or more person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ing,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any person.

PRICE PAID OR PAYABLE - This term is defined as the total payment (whether direct or indirect and exclusive of any costs, charges, or expenses incurred for transportation, insurance, and other C.I.F. charges) made, or to be made, for imported merchandise by the buyer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Question B: ASSISTS - The term "assist" means any of the following if su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free of charge or at reduced cost, by the buyer of the imported merchandise for use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or the sale for export to the United States of the merchandise:

(1) Materials, components, parts, and similar items incorporated in the imported merchandise.
(2) Tools, dies, molds, and similar item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imported merchandise.
(3) Merchandise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the imported merchandise.
(4) Engineering, development, artwork, design work, and plans and sketches that are undertaken elsewhere than in the United States and are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of the imported merchandise.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 This term is defined as the amount of any subsequent resale, disposal, or use of the imported merchandise that accrues,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seller.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 This term relates to those amounts that the buyer is required to pay, directly or indirectly, as a condition of the sale of the imported merchandised for exportation to the United States.

PAPERWORK REDUCTION ACT STATEMENT -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this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 valid OMB control number and an expiration date. The control number for this collection is 1651-0023. The estimated average time to complete this application is 2 hours. If you have any comments regarding the burden estimate you can write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799 9th Street, NW., Washington DC 20229.

<그림 4-5> CBP FORM 28 (by CBP Homepage[40])

3.2 한국 원산지 검증 일반 절차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각각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절차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 등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 내용에 대하여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일반적 검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섬유 및 의류 분야에 관한 검증 절차는 일반적 검증 절차에 포함되어 미국 체계와 같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섬유 및 의류 품목에 대한 수출검증에 대비하여 섬유분야 특화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섬유 및 의

---

40)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bp.gov) 2013. 3. 5. 조회자료

dCollection

류 품목에 대한 검증 절차 규정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표 4-5>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원산지 검증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세관에서는 자체 위험지표에 따른 정보 분석, 본청 기획검증 지시, 합리적 의심 제기 등의 사유로 검증을 발의하게 된다. 검증 대상 업체를 선정하면 국내 수입자에게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원산지검증을 위한 서류, 장부, 전산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세부적인 요청사항들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2에서 정한 원산지검증 준비자료 목록표의 자료, 별지 13호 서식의 원산지 소명서 및 별지 14호 서식의 원산지질문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수입자는 조사통지를 받은 후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소명되지 못할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으로 검증을 의뢰하거나 직접 현지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검증이 완료되면 수입자 서면검증 결과는 고시 별지 제15호 양식에 따라 통지되며, 현지검증 결과는 고시 제16호 양식에 따라 통보된다.

<표 4-6> 우리나라 원산지검증 절차(수입물품)

번호	단계명	내용
1	원산지 조사 인지	정보분석 또는 합리적 의심으로 대상 선정
2	국내수입자 서면통지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자료 요구 - 최초 기한 30일, 수령일부 15일내 1회(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3	서면검증 결과통지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결과 통보 - 이상없음 또는 계속 검증 여부 결정
4	현지검증 실시	현지검증 팀 구성 및 수행
5	검증결과 통보	고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결과 통보. - 이의신청 절차 후 과세전통지(추징) 또는 이상없음

*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저자 재구성)

Collection

4. 미국의 해외 검증 사례

미국은 최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다. 미국은 국력이 비슷한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보다는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미국은 미 관세청 섬유제품 검증팀을 운영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모든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검증(verification) 매뉴얼을 두어 수행하고 있다.

4.1 NAFTA 검증 매뉴얼[41)]

NAFTA 검증매뉴얼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국인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간에 합의된 상품교역에서 발생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규정 규제, 원산지 상품, 특혜세율의 적용에 관한 심사(audit) 또는 검증(verification)에 대해 7장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1장에서는 매뉴얼의 목적 및 법적 체제, 2장에서는 당사국간 협력관계, 3장에서는 일반회계준칙에 입각한 심사 표준, 4장에서는 NAFTA 심사(검증), 수출자 현지 검증, 검증 유형, 5장에서는 NAFTA 심사(검증)의 범위, NAFTA 수출자 검증과 관련한 검증기간, 범위, 수입자 신분, 검증 절차, 6장에서는 NAFTA 수출자 검증 프로세스, 7장에서는 워킹그룹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검증에 있어 중요한 장은 제5장과 제6장인데, 제5장에서는 5가지의 검증프로그램을 제시한다. ① 불인정공정(Non-qualifying Operation) ② 세번 분류(Tariff classification) 및 역내가치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s) ③ 이

41)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에 개재된 NAFTA 검증매뉴얼 내용을 저자가 재정리함 (http://www.cbp.gov/xp/cgov/trade/trade_programs/international_agreements/free_trade/nafta/customs_procedures/origin_verifications.xml) 2013. 3. 6. 조회

Collection

전가격산정방법(Transaction value method) ④ 순원가법(Net cost) ⑤ 환적(Transshipment)이다.

위 ③, ④번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하에 13개의 하위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제외한다.

수출자 현지 검증과 관련하여 가장 연관있는 제6장에서는 원산지기준 검증을 위한 방법론을 국가별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4.1.1 캐나다 검증 사례

캐나다는 NAFTA 1장 506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데 사전에 검증 대상 선정을 위해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불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품목을 선택하게 된다.

다음,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냄으로써 검증을 시작하게 되고 일정기간(통보 수령 후 30일) 이내에 서면 회신이 없으면 특혜세율을 배제하게 되고, 수입자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지역 세관에서는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현지검증(On-site visit)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행동 요령도 소개해 두고 있다. 현지검증을 수행할 경우 미국 세관에서는 전형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소위 JUMP TEAM에서 수출국 현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방문하여 검증을 실시한다.

검증을 수행하기 전에 <표 4-7>과 같이 현지 검증 계획을 수립한다.

Collection

<표 4-7> 현지검증 계획 단계 사항

1. 부가가치기준 질문지 적정성 분석
2. 현지방문 효율적 준비를 위해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추가 정보 수집
3. 타 부서로부터 자료 수집(예: 시설정보, 검색관리시스템, 수입규모 등)
4. 검증관련 산업분야에 관한 참고 자료 수집
5. 조사 및 심사부서로부터 수출자/생산자에 관한 정보 수집
6. 검증 임무 계획 수립서 준비

출처 : NAFTA Audit(verification) MANUAL CH.6

현지 검증 시 전형적인 계획안은 다음 <표 4-8>의 내용을 포함한다.

<표 4-8> 검증 계획 제안서 포함 내용

1. 검증목적 2. 검증범위(기간, 제품, 모델) 3. 검증요원목록
4. 임무사항 5. 검증계획(일자, 방문일자, 종료, 총 예상소요시간 등)
6. 검증사유(원산지적정성, 부가가치진술, 특혜세율, 예산위험 등)
7. 회사개관(일반정보, 연락처, 공장통계, 연 판매액, 자회사/관계사 현황 등)
8. 검증관심사(내부거래 재료, 대체가능재, 관련공급자)
9. 검증조사(가이드라인, 임무, 표준업무자료, 검증자료 배치)
10. 평가프로세스(평가기간 등) 11. 세부검증프로그램
12. 특정참조내용(NAFTA, 부처제안서, 미 관세법)
13. 개시인터뷰 주제

출처 : NAFTA Audit(verification) MANUAL CH.6

현지 검증은 다음 <표 4-9>에서 정한 검증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Collection

<표 4-9> 현지검증 프로세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Opening Interview	Execution of verification	Preparation of Working paper	Exit Interview
검증목적 설명	계획제안서에 따라 단계 수행	검증보고준비	검증결과 토의

검증 수행 시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회사종사원 및 외부회계전문가와의 인터뷰, 회계·구매·기타 시스템 약식 연습,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시스템 테스트, 부가가치기준 질문지 진술에 대한 평가, 입증자료(송품장, 공급자증명 등) 파악, 원재료 공급자 검증 등이 이루어진다.

특히, 검증 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작동되는 가를 살핀다. 예를 들면, 내부통제에 의해 작성된 평가서는 소위 정책리뷰, 내부통제관련 회계관리 시스템의 표준체크리스트인 것이다.

내부검토 및 현지검증의 최종단계에서는 회계 관리자 또는 부관리자급에 의해 서면 결정서 및 검증파일이 작성된다. 검증 결과 NAFTA 특혜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만약 충족하지 아니하며 부인 결과를 30일 내에 송부한다. 이후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1회에 한해 3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비원산지로 판명되면 재결과서(Re-determination notice)를 송부하고 특혜세율 배제를 결정한다.

최종 결과서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 캐나다 수입자와 캐나다 세관 지역 사무소에 송부하게 되고 재평가(재정리) 과정을 거친다. 지역 세관사무소는 DAS (Detailed Adjustment Statements)에서 수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자에게 부인통지서를 송부한다.

아래 <그림 4-6> 사례는 NAFTA 협정국인 캐나다로 수출한 미국산 면제 티

Collection

셔츠에 대한 원산지 검증으로 검증과정에서 중요시하는 기록보관(Record Keeping) 의무를 위반하여 추징당한 사례이다.

원산지 입증서류에 대한 근거 미제출로 인해 추징당한 사례 [캐나다 사법재판소 AP-2010-014]

Appeal No. AP-2010-014

4. Massive Prints later became the subject of a verification of origin by the CBSA. On April 17, 2008, Massive Prints provided the CBSA with a certificate of origin and a manufacturer' s affidavit completed by American Apparel. The certificate of origin certified that certain cotton T-shirts were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NAFTA countries and that they met the specific rule of origin, set out in Annex 401, which applied to the tariff classification.

- 중 략 -

19. The CBSA submitted that it sent a first verification letter, as well as a subsequent verification letter, to American Apparel, the producer of the goods in issue, requesting information in the form of affidavits from all suppliers of the yarns used to make the goods in issue and fabric knitters, cutters and sewers of the goods in issue. It argued that, as both Massive Prints and American Apparel failed to provide the CBSA with the required information, the CBSA was entitled to withdraw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rom the goods in issue, pursuant to subsection 42.1(2) of the *Act*.

- 중 략 -

DECISION : the appeal is dismissed

○ 물품 : 미국산 cotton T-shirts → 캐나다 수출
○ 미국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NAFTA 협정관세 적용
○ 캐나다 관세당국 원산지 검증 :
① 미국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와 미국 생산자의 진술서를 캐나다 관세당국에 제공
② 미국 생산자에게 T-shirts에 사용된 사(yarn)의 공급자에 대한 추가정보 요청
☞ 미국 수출자와 생산자는 추가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협정세율 적용 배제.
○ 미국의 생산자가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 배제는 정당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캐나다 사법재판소에서 판결.

<그림 4-6> 검증사례(Ⅰ)(by KOFOTI[42])

4.1.2 멕시코 검증사례

멕시코는 DIA(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Audit)에 의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 구내 방문을 위한 검증 질문지를 송부한다. DIA는 검증대상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Annex 401에 따라 제조 또는 조립공정을 관찰하고 원산지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검증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DIA의 검증에서 부가가치충족 여부 검토, 재고관리시스템, 자동차 부품류 추적 등을 포함한다.

DIA에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검증 동기를 마련하는데, 수

42) KOFOTI(한국섬유산업연합회, http://www.kofoti.org), 2013. 3. 6. 조회

Collection

입물량이 상당한 경제 동향 분석, 고위험 수입(쿼터 또는 반덤핑, 상계쿼터 등),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지닌 품목 등을 검증 대상으로 선별한다.

이때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등의 확인하기 위한 검증 통지서 및 원산지 검증 질문서를 보내어 수령일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이 없거나 제출자료를 통해 원산지결정기준 등이 불충족할 경우에는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하며 수입자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만약 수출자 및 생산자를 방문하여 검증하려는 때에 배달증명(certified mail) 방식으로 검증 연락을 취하여 관련자료를 접근하거나 현지검증(On-site visit)을 하게 된다.

검증계획 수립단계 및 현지 검증 단계 계획안은 캐나다와 동일하다. 현지검증에 임하여서도 캐나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 관계자와 인터뷰 수행, 회계·구매·기타 시스템 예비 연습,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시스템 시험, 부가가치기준 진술에 대한 정합성 검토, 공급자로부터 외부 확인자료 입수 등을 하며 검증의 복잡성에 따라 2주에서 10주간 검증을 수행한다.

검증이 종료되면 Appendix A에 따라 최초로 서면 결정문을 통보하고,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검증 결과 NAFTA 특혜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만약 충족하지 아니하며 부인 결과를 30일 내에 송부한다. 그러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1회에 한해 3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비원산지로 판명되면 재결과서(Re-determination notice)를 송부하고 특혜세율 배제를 결정한다.

최종 결과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멕시코 수입자(Fiscal Federal Code 48조 수록)에게 송부하고, 수입자는 15 영업일 기간 동안 추가의견진술을 하거나 최종 원산지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진술기간이 경과하면 수입자는 재평가 의견서(세금 및 추가요금)를 통지한다.

아래 <그림 4-7> 사례는 NAFTA 협정국인 멕시코로 수출한 미국산 의류에 대한 원산지검증으로 검증과정에서 중요시하는 기록보관(Record Keeping) 의무

Collection

를 위반하여 추징당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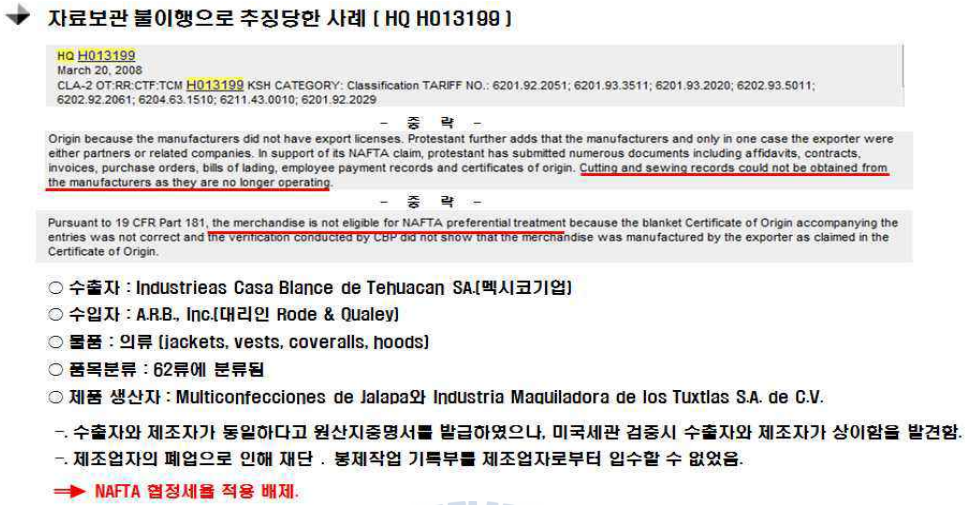

<그림 4-7> 검증사례(Ⅱ)(by KOFOTI[43])

43) KOFOTI(한국섬유산업연합회, http://www.kofoti.org), 2013. 3. 6. 조회

Collection

제5장 한-미 FTA 검증의 효율적 대응방안

제1절 한-미 FTA 검증의 취약성

1. 원산지 직접 검증 경험 부족

우리나라는 미합중국과 체결한 한미 FTA 협정이 2012. 3. 15.에 발효되었다.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한국 수출물품의 특혜적용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한국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한-아세안 FTA 및 한-EU FTA 간접검증에 의한 검증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직접검증을 채택한 협정은 현재 한미 FTA와 한-칠레 FTA인데 우리나라에서 직접검증을 수행한 것은 한-칠레 FTA 협정에서 1건만 있을 뿐이다. 특히, 한-EU FTA 협정이 발효된 2011. 7. 1. 이후에는 EU 27개 회원국 들 중 일부 국가들로부터 유럽으로 수출한 한국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의뢰(간접검증) 건수가 급증하였다.

<표 5-1> 협정별 수출물품 검증 추이

협정	발효일	'08	'09	'10	'11	'12	계
아세안	'07.6.1	1	1	2	19	15	38
EU	'11.7.1	-	-	-	41	163	204

출처 : 관세청 자료('12년 말 현재)

Collection

상대국에서 특혜세율을 적용받은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의뢰가 증가하였지만 체약 상대국의 간접검증 요청에 의한 우리나라 관세청의 검증에 불과하며 섬유 및 의류 업종에 대한 검증 실적을 따져보면 그 수는 미미한 편이다. 우리나라가 수출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체약상대국 방문 하에 이루어지는 직접 검증 또는 한미 FTA의 섬유 및 의류분야에서의 공동 검증의 사례가 없으므로 검증을 수행하거나 대응하는 정부, 섬유 및 의류를 미국으로 수출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수출업체의 검증 경험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수입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의 역시 한-아세안 FTA 및 한-EU FTA를 중심으로 계속되어 왔다. 대부분 체약상대국으로 하여금 검증을 수행하게 하는 간접검증이 주로 이루어져있어 관세청 검증요원에 의한 검증 경험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관세청은 섬유 및 의류분야에 대한 특화팀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내부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활동 실적은 없으며, 미국의 TPVT(미국 섬유류 원산지 검증팀 : Textile Production Verification Team)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축적된 원산지 검증 수행과는 대조적이어서 걸음마 단계로 정부와 기업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 군 중심의 대미 수출 증가업체들은 섬유산업연합회 등을 통한 직접 검증대비를 하고 있으나, 현재 미국 수입자 측으로부터 CBP FORM 28 등에 의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례가 약 100여 건 가량 보고 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자료소명 미흡 사유로 특혜세율이 배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보자료 제공을 성실히 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미국 측 검증이 수행되지 않으나 불성실할 경우에는 특혜세율적용이 배제되거나 우리나라로 직접 검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료보관(Document Keeping)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Collection

2. 원산지 결정기준의 복잡성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및 복잡성은 미국이 자국 산업보호의 명목으로 1970~80년대에 선진국들이 취하였던 MFA의 수입쿼터제를 통한 섬유산업을 통제하려던 것과 같은 궤적을 그린다고 할 수 있다. 즉, MFA 시기에는 섬유 및 의류의 대 수요국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섬유 및 의류 주요 공급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통제함으로써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

한미 FTA의 체결과정에서도 미국은 자국이 체결한 여타 자유무역협정에서 적용하였듯이 자국의 민감 산업인 전통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섬유 및 의류 분야에 대해 엄격하면서도 보수적인 내용을 채택하였는데, 체약국간 특혜세율을 적용할 잣대인 원산지결정기준을 엄격히 한 것이다. 즉 섬유 및 의류부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른 일반품목에 적용하는 기준보다 엄격하고 복잡하다.

통상 섬유원료(Fiber)에서 방적을 통해 원사(Yarn)를 생산하고 이를 제직기 또는 편직기로 짜내면 직물(Fabric)이 제조된다. 직물을 원료로 하여 최종 완제품인 의류(Apparel)가 완성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섬유 및 의류 제품군이 형성되는데, 원산지결정기준은 섬유원료가 가장 엄격하여 역내산을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의 총 중량의 7%를 역외산 사용 허용, 관세가격의 10% 이내에서 세트의 역외산 취급 허용, 원사기준 적용 예외품목 지정(33개 품목), 역내 공급부족 원료 역외조달 허용 등의 탄력적 허용 범위가 있어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것들이 있다.

Collection

3. 외부 정보 수집의 비대칭성

한미 FTA 협정문에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섬유 및 의류 제조기업에 대한 정보를 권한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집하게 한 후, 매년 미국 측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위임하였다.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 및 의류의 대미 수출업체 약 1천개 사로부터 생산현황, 근로자 배치 및 설비 등에 대한 진술 등 생산정보들을 취합하였다. 우리나라가 미국 측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섬유 및 의류 제조기업의 상세한 정보들로 한미 FTA 발효 2년차인 2013년 초부터 매년 미국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반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섬유 및 의류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특혜 적용을 받는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검증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검증은 용이한데 반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검증시 업체 선별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일반적으로 섬유 및 의류분야는 간접검증 또는 현지공동검증을 통해 특혜세율 적용품목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통관단계에서 1차적으로 제조자식별번호 및 제조자진술서를 기초로 선별 검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섬유 및 의류 제조기업의 정보를 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제3국 불법 우회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손쉽게 수행 할 것이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검증에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이므로 외부 정보 수집에 매우 취약하다.

Collection

제2절 한-미 FTA 검증의 효율적 대응 방안

1. 내부 검증 능력 제고 프로그램 마련

한미 FTA 섬유 및 의류분야의 검증은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처럼 아직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부당국(세관), 수출입업체 및 시스템 개발업체 등 검증의 직·간접 당사자들은 각각 내부 검증능력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1.1 관세청 내부능력 제고

검증 수행 정부기관인 관세청은 미국 측의 섬유 및 의류 간접검증 대비 차원에서, 첫째, 섬유 및 의류부문 검증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수행해오던 한-EU FTA 협정상 대 EU 섬유 및 의류 수출품목의 간접검증 경험과 최근 관세청에서 발간된 타이어, 가전제품, 선박, 셋톱박스, CCTV,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검증 매뉴얼을 정립함으로써 한국산 섬유류 및 의류 간접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 섬유 및 의류분야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정리 책자만 배포되어 있는 상황이다.

둘째, 미국의 NAFTA 협정적용으로 축적된 섬유 및 의류부문 현지검증 사례,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및 법원 판례를 수집·분석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미국 세관 측과의 공동현지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셋째, 섬유 및 의류 품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섬유기업 등록대상 정보를 수집하는 섬유산업연합회, 제조업 이외 무역업 종사자들을 관리하는 한국무역협회와 정보교류를 증진하여 대미 수출 섬유 및 의류 제조업자 뿐 아니라 미국산 섬유와 의류를 수입하는 비제조 무역업자를 관리하여 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넷째, 한미 FTA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 시대에 맞추어 인력 풀(POOL) 및 대미 수출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을 재편하고 검증 부서 요원

Collection

뿐 만 아니라 통관담당 직원까지 전문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통관 단계에서부터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증 마인드를 넓혀야 한다.

1.2 대미 수출업체 능력 제고

수출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주체로써 미국 측 직접검증을 대비하여, 첫째, 섬유 및 의류에 대한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면서 관세사 등 전문가그룹을 통해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서 한 단계 진보한 전사적 검증관리시스템(EVP)을 구축하여야 한다. 일부 솔루션 개발업체의 시스템으로 구축단계에 있으나 한미 FTA에서 채택한 수출자 자율증명방식의 취지를 본다면 수출기업 CEO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인 것이다.

둘째, 한미 FTA 협정조항에 따라 미국 측 제공목적으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제출한 생산기업정보 즉, 기업 개요(대표자, 주소, 연락처, 소유자 및 이사, 국적 등), 생산능력(근로인원수 및 업무, 생산제품에 대한 기술), 생산설비(기계의 종류와 대수), 기계의 주당 가동시간, 원재료 공급기업의 신원 및 바이어 개요 정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하며 미국 측 통관시 제출한 제조자식별번호(MID : Manufacture's Identification)와 제품의 생산에 사용한 섬유·사·직물의 생산업체 혹은 가공·재단·봉제 업체들이 작성한 제조자진술서(M/A : Manufacture's Affidavit)의 기록 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당국,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및 한국무역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정보 공개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관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시 특혜세율 적용에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넷째, 미국의 해외 원산지 검증사례는 대부분 원산지 입증서류 미제출 혹은 자료보관 불이행 등으로 추징된 것이므로 회계(Accounting) 중심의 자료보관이 아닌 원재료 원산지 중심의 자료보관 시스템화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판정 솔루션 시스템 개발업체가 수출입업체의 내부 검증

Collection

능력 제고를 위해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복잡한 규정과 결정기준을 지니고 있는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업체 맞춤형 원산지 판정시스템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통용되는 관세청(정부) 및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공동 개발한 FTA-PASS, 한국무역협회에서 개발한 FTA-KOREA, 에코클라우드(주)에서 개발한 FTA-INSIGHT 시스템은 섬유 및 의류 산업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화되지 못하였다. 복잡한 원산지 기준을 쉽게 풀어내는 것이 과제인 것이다.

2. 수출 급증 품목업체 지원

한미 FTA가 2012. 3. 15. 발효된 후 약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국무역협회를 통한 우리나라 섬유·의류분야 대미 수출증가 품목은 한미 FTA 양허 유형 중 무관세 적용(A), 지속적 무관세대우(K) 및 원사기준 적용예외품목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섬유원료의 경우 화학 섬유원료인 54류(인조필라멘트 외), 55류(인소스테이플 외)이며, 섬유재료는 56류(워딩, 펠트, 부직포), 59류(침투, 도포 직물)이고, 의류에서는 63류(방직용 섬유의 기타제품, 세트, 넝마, 중고의류)가 한미 FTA 발효 이후 증가한 품목 군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품목들의 4단위 세부 품목군은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섬유원료는 7개 품목, 섬유재료는 11개 품목, 의류는 5개 품목인데 이들을 수출하는 업체를 중점 지원해야 한다.

<표 5-2> 한미 FTA 발효 후 수출 급증 품목 군(정리)

분류	HS2단위	HS4단위	
섬유원료	54, 55류	10%이상 증가	5402, 5408, 5503, 5508, 5510
		10%미만 증가	5403, 5407
섬유재료	56, 59류	10%이상 증가	5601, 5602, 5603, 5604, 5605, 5901, 5903, 5905, 5910, 5911
		10%미만 증가	5907
의류	63류	10%이상 증가	6301, 6303, 6307, 6309
		10%미만 증가	6302

Collection

특히, 원사기준 적용 예외품목으로 분류되는 것들을 제조 수출하는 기업들이 한미 FTA 협정 최대 수혜 품목이므로 이들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1. 정부차원의 지원

첫째, 섬유류 수출급증 업체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여야 한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대미 수출업체들은 미국으로 연례 기업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2013년 1월 현재 수집한 대미 수출기업 1,000여개 업체에 대한 기초 정보관리 부처 지식경제부 및 수탁기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업체 관리 매뉴얼을 구축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예상되는 섬유 및 의류 분야 고강도 검증을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 서류보관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기업자율 정착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미국으로부터의 검증은 초기단계 원산지결정 기준 입증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미국 수입자(CBP FORM 28에 의한 자료제출)를 통한 검증 전 단계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미국 관세청에서 요청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입증 서류 및 동 서류의 보관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업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대미 수출시 수출신고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현행 수출신고서는 동시다발적인 FTA 시대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과 연관된 신고는 원산지부호 표시란에 'Y', 'N'으로만 표시하게 되어 있다. 우선 섬유류 수출시에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코드 입력 및 생산 원재료의 원산지 및 공정 수행 내역을 등록하게 하여 정부는 물론 업체에서도 실시간으로 특혜세율적용 섬유류 수출 동향을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2.2. 원산지 판정 시스템 개발업체의 지원

검증 혹은 원산지결정기준 판정시스템 개발업체들은 섬유 및 의류 부문의 원산지 판정을 빠르고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업체 맞춤형 시스템을 조속히 개

Collection

발하여야 한다. 물론 시스템 구축에 있어 수출업체 마다 특성이 있어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대규모 수출기업보다 중소 수출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여 섬유·의류 원산지 판정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얻어낸 원산지결정기준 완화항목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드바이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3. 유관기관과의 공조 확대

섬유 및 의류 부문은 1970년대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MFA 시기의 대표산업이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효하는 FTA 시대에 이러한 대표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내부적인 능력 제고나 업체 지원 보다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일 것이다.

미국으로 수출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섬유 및 의류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상품과 달리 원산지증명이나 원산지검증의 방법과 수단이 특별하다. 특히, 생산기업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비대칭성 하에서는 연관된 기관 간 협력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할 것이다.

원산지 간접검증 혹은 공동현지검증을 수행하는 관세청, 생산기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담당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미수출시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한국무역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개발업체 - 예를 들면, FTA-PASS를 개발한 국제원산지정보원, FTA-INSIGHT를 개발한 에코클라우드, FTA-KOREA를 개발한 한국무역정보통신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그 주체는 원산지검증을 주도하는 관세청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관세청은 '섬유 및 의류부문'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대미 섬유류 수출업체에 대한 데이터를 한국섬유산업연합회로부터 이관받아 관리하여 수출증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Collection

개발업체는 섬유 및 의류분야 특화 솔루션 제작을 통해 국가 표준프로그램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배포하여야 자료보관과 원산지입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야 한다.

또한, 섬유류 산업 지원 그룹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섬유류 수출업체에게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마련, 미국 섬유 산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세청 및 원산지 판정 솔루션 개발업체와의 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한미 FTA는 원산지 증명방식이 기관발급이 아니라 기업 자율성을 최대로 하는 밑바탕 하에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므로 정부기관의 지나친 개입은 지양할 점이라는 것은 명심할 사항이다.

Collection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결과 요약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1970년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한 산업이었다. 1970년대 선진국들의 자국 보호를 위한 각종 쿼터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섬유 선진시장에서 시장점유를 확대하면서 수출 규모를 창출해 왔었다. 개도국들의 지속적인 자유화 요구에 따라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섬유자유화가 타결되었음에도 값싼 노동력을 내세운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의 대규모 섬유류 공급으로 인해 우리 섬유 및 의류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섬유 및 의류 산업 등 침체산업의 부활을 위해 2000년부터 세계 각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섬유 및 의류에 있어서 효과를 본 자유무역협정은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들의 연합체인 ASEAN일 것이다. 한-아세안 FTA 협정이 2007년에 발효되고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섬유 및 의류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제조기반을 유지하였다. 2011년 7월에 유럽연합(EU) 및 2012년 3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 섬유산업에는 일대 변화가 발생하였다.

미국과의 FTA가 2013년 3월에 발효된 이후, 섬유 및 의류산업의 수출동향에서 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미국시장으로 수출할 경우 섬유원료, 섬유재료 및 의류 등에 부과되던 다양한 종가세율, 종량세율 그리고 종가세율과 종량세

Collection

율이 결합된 혼합세율이 즉시 철폐되거나 5년 또는 10년 균등 철폐되는 수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한미 FTA 협정문 제4장에서는 섬유 및 의류에 대하여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규정을 담고 있다. 첫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원료 또는 원사가 동일 품목번호라도 허용되는 원료 또는 원산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 총 중량의 7퍼센트까지 허용하는 최소허용수준이 일반 상품에 적용되는 수준인 10%보다 엄격하다.

둘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일반해석 규칙 3에 따라 소매용 세트로 분류될 수 있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세트 내 비원산지 상품의 총가치가 관세가격의 10% 이내 허용수준이 일반 상품에 적용되는 수준인 15%보다 역시 엄격하다.

셋째, 미국 수입 통관시 제조자식별번호(MID : Manufacture's Identification)와 제품의 생산에 사용한 섬유·사·직물의 생산업체 혹은 가공·재단·봉제 업체들이 작성한 제조자진술서(M/A : Manufacture's Affidavit)를 제출하여야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넷째, 원산지결정기준이 일반 물품과 달리 엄격하여 협정당사국의 실(yarn)을 사용하여 직물(fabric)을 제직 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cut)·봉재(sew)하여야만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일반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절차와는 달리 수입된 한국산 섬유 및 의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있거나 원산지 우회 수입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수입국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검증을 수행하게 하거나 미국 세관 당국과 공동현지검증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하게 검증한다는 점이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회원국들과의 섬유 및 의류 무역에 관한 축적된 해외 현지 검증의 경험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섬유업계가 숙지하여야 할 점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한미 FTA 협정문에서 정한 이러한 엄격한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섬유 및 의류 수출기업들은 관세 즉시철폐 품목 및 엄격한 원사기준(Yarn-Forward) 예외로 인정받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출이 급증한 품목을 요약하면 섬유원료에서는 화학 섬유원료인 54류(인조필라멘트 외), 55류(인소스테이플 외)가 있으며, 섬유재료는 56류(워딩, 펠트, 부직포), 59류(침투, 도포 직물)로, 의류에서는 63류(방직용 섬유의 기타제품, 세트, 넝마, 중고의류)로 파악되었다.

한미 FTA가 발효 후 미국 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검증요청이 접수되지 않아 원산지 직접검증의 경험이 일천하다. 하지만, 공식적인 검증 전에 미국 내 법률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미국 관세청 서식 28(CBP FORM 28)에 의한 정보자료 요청은 지난해 약 100여건이 미국 수입자를 경유하여 섬유 및 의류 수출자에게 접수된 사실이 있다. 그 중에서 약 30%이상의 수출기업이 원산지 입증 부족, 자료 미제시, 미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미국 측 수입자가 통관에서 적용받았던 특혜세율을 배제되어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은 그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출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미국은 NAFTA 등 여타 국가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섬유 및 의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섬유류 원산지 검증팀(TPVT)을 운영하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총 1,671개 섬유 및 의류 제조공장을 실사하였다. 이 결과 연평균 35%의 적발률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원산지 검증 사전 자료 요청 뿐 만 아니라 간접검증 혹은 공동 현지 검증에서 적발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미 FTA 발효 이후에 급증하는 섬유 및 의류수출 증가 시 미국으로부터의 고강도 검증이 예상된다.

본 논문은 MFA 시대의 세계 섬유산업과 한미 섬유산업에 관한 일반 및 수출입 통계와 한미 FTA 체결 이후 우리 섬유산업의 무역액 변화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서 규정한 미국의 검증 종류·특성·현황·절차·사례를 차례로 고찰함으로써 정부 및 수출기업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연구하였다.

Collection

본 연구 결과 한미 FTA 섬유 및 의류분야 검증에 있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수출기업, 솔루션 개발업체가 우리나라의 간접검증 및 미국 당국의 공동 현지검증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방안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내부 검증능력 제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미국 측의 간접검증에 대비하여 섬유 및 의류부문 검증 매뉴얼 배포, 미국의 NAFTA 등 해외 섬유류 검증 사례 및 판례집 발간, 제조업 이외 섬유 및 의류 무역업 종사자 관리, 미국 TPVT조직과 같은 특수목적팀의 조속한 운용 및 FTA 검증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대상 확대가 요구된다. 수출기업은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주체로써 미국의 공동현지검증에 대비하여 섬유 및 의류에 대한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이해하고 전사적 검증관리시스템(EVP; Enterprises Verification Planning)을 구축하고 미국 당국에 제출한 생산기업정보, 제조자식별번호(MID) 및 제조자진술서(M/A) 등 원산지 충족 입증자료를 기록 유지하면서, 정부 및 유관기관이 수행하는 원산지 사전심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미 FTA가 발효된 후 1년 동안 급증한 섬유 및 의류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및 원산지판정 솔루션 개발업체의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수출급증업체 관리 매뉴얼 및 서류보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서류보관(Record Keeping) 미비로 인한 특혜세율 적용배제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수출신고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수출시 생산 원재료 이력관리를 시행하여 수출업체 스스로 미국 검증에 대비할 시스템을 마련하고, 개발업체는 정부와 합동으로 급증품목 중심 원산지 판정 시스템 시범 사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미국의 원산지검증에 직간접으로 연관된 정부, 기관 및 협회의 유기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미국은 주로 검증 사전자료 요청이 일반적이므로 업체로부터 자료 요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협회로부터 생산기업정보에 기초한

dCollection

자료를 공유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면서 시스템 개발 업체와는 맞춤형 시스템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교류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000년도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된 FTA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의 수혜를 보며 세계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체약 상대국 특히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원산지 검증에 대해 수출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미 FTA에서 수혜품목으로 꼽힌 섬유와 의류수출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특혜세율 적용에 따른 한국산 여부 결정기준의 관세청의 간접검증이나 미국의 공동 현지 검증은 전무한 실정이다. 단지 정식 검증 전 미국 수입자로부터의 자료요청만 쇄도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나 유관기관들이 대미 섬유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의 복잡한 규정을 전파하는 데에도 한계에 이르고 있어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검증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미 FTA 발효 1년을 맞아 여타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검증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 섬유 및 의류분야 조항들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협정 발효 이후 섬유 산업의 변화를 통해 수출 급증 품목을 추출한 뒤 한미 FTA에서 정한 미국 검증의 특성, 종류, 방법, 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원산지검증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원산지 검증에 대한 기존 연구의 틀을 벗어나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이 큰 산업 중 섬유 및 의류산업을 중심으로 원산지 검증에 대해 연구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공식적인 원산지 검증 사례가 일천한 환경 속에서 한미 FTA 협정문, 관세청 내부자료 및 무역 통계자료에만 의존한 사전예측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한 것은 본 논문의 한계라고 할 것이다.

Collection

앞으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간접검증 및 미국의 공동현지검증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원산지 검증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정립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Collection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조민형, 1988, 다자간섬유협정과 우리나라 섬유류 수출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경성대학교

이무영, 1988, 다자간섬유협정체제에 관한연구(한국섬유산업경쟁력제고 중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이종은, 1989, 다자간섬유협정과 우리의 대응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 경성대학교

이재환, 1997, 한국섬유산업의 수출증진 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명지대학교

김봉국, 2008, 한미 FTA 타결과 한국의 대미국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경희대학교

김준환, 2008, 한미 FTA 원산지규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한국외국어대학교

이명호, 2009,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이 섬유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고려대학교

심갑영, 2010, 미국의 FTA 원산지제도 연구를 통한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단기국외훈련보고서, 관세청

주재협, 2010,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세관 절차 규정에 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호서대학교

권정현, 2011, 한미 FTA에 따른 한국섬유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단국대학교

Collection

임종민, 2012. 한국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기업의 원산지검증 대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한국해양대학교

황철훈, 201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별 원산지규정과 한미, 한EU FTA 원산지 규정의 비교연구, 단기훈련보고서, 서울:인하대학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2.9, 한미 FTA 발효 6개월 평가와 전망, 한국무역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2. 통계로 보는 섬유산업,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료실

___, 2012. 한미 FTA 연재 시리즈 1~4,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료실

___, 2012.5. 섬유패션산업의 FTA 이해와 활용,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료실

___, 2013.1. 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개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료실

___, 2013.2. 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절차,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료실

윤충원, 2004,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집문당

최홍석, 이영달, 2011, FTA시대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청, 2008, 섬유 및 의류제품 FTA 원산지기준 해설서, 관세청 FTA연구회

___, 2008, 미국 FTA 제도 등 정보 수집 출장결과 보고, 관세청

___, 2009, 섬유전문가양성과정, 관세청

___, 2011, 한미FTA 활용매뉴얼, 관세청

___, 2012, 한미FTA 관세행정 주요내용, 관세청

___, 201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 지침, 관세청

기획재정부, 2010.5. FTA 활용 종합가이드북, 기획재정부

Collection

2. 인터넷 웹사이트

국제원산지정보원 http://www.origin.or.kr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go.kr

대한민국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대한민국기획재정부 FTA 종합포털 http://www.frahub.go.kr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미국 관세청 http://www.cbp.gov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섬유개발연구원 http://www.textile.or.kr

한국섬유산업연합회 http://www.kofoti.or.kr

FTA포털 http://fta.customs.go.kr

GATT 디지털도서관 http://gatt.stanford.edu

UN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comtrade.un.org

Collection